북한 정치범수용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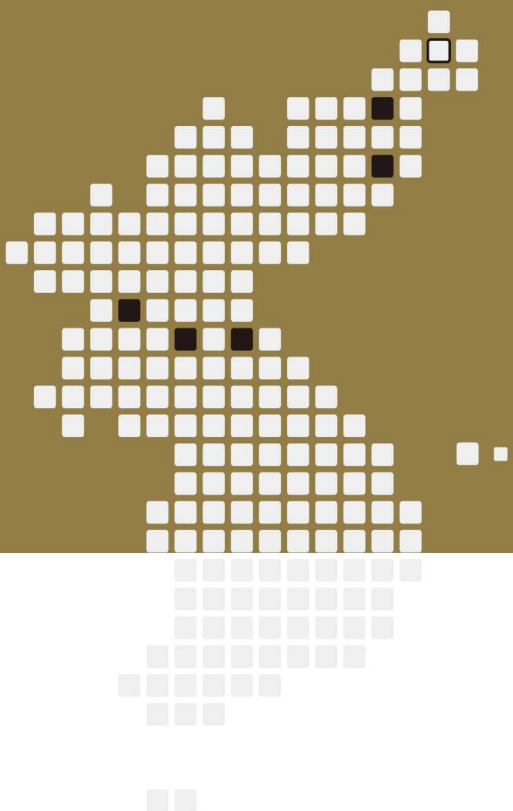

책임연구원: 이금순

공동연구원: 김수암
이규창

보조연구원: 홍예선
김경란

KINU 통일연구원

북한 정치범수용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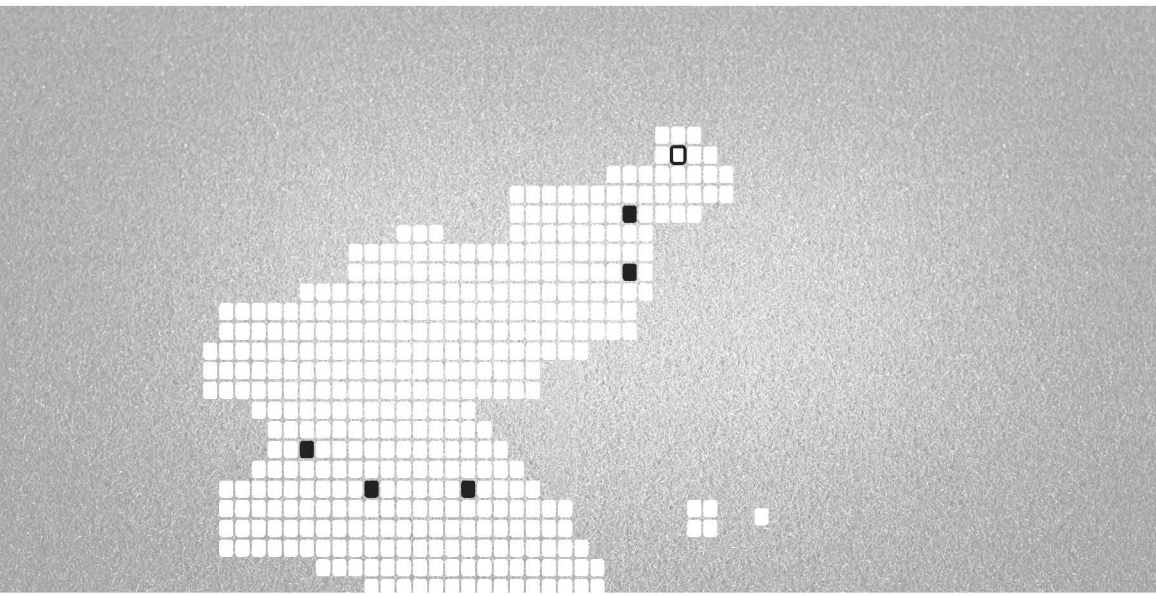

책임연구원: 이금순

공동연구원: 김수암
이규창

보조연구원: 홍예선
김경란

KINU 통일연구원

북한 정치범수용소

인 쇄 2013년 1월
발 행 2013년 1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세원문화사 (02-2265-1141)
인 쇄 처 (주)세원문화사 (02-2265-1141)

ISBN 978-89-8479-702-4 93340

가 격 ₩6,500

ⓒ 통일연구원, 201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타: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북한 정치범수용소

본 수탁과제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Ⅰ. 서론 ····· 1
1. 발간목적 ····· 3
2. 자료수집 방법 개요 ····· 4

Ⅱ. 북한체제와 정치범수용소 ····· 7
1. 정치범죄의 의미와 북한 정치범수용소 ····· 9
2. 정치범수용소의 유형 ····· 11
가. 마을형태와 교화소형태 ····· 11
나.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 ····· 13
다. 단독수용 관리소와 가족동반수용 관리소 ····· 15
라. 보위부 운영의 관리소와 보안부 운영의 관리소 ····· 16
3. 정치범수용소의 연혁과 규모 ····· 17
4. 정치범수용소의 운영과 북한의 체제 유지 ····· 22

Ⅲ. 정치범수용소 최근 변화 동향 ····· 27
1. 북창 관리소의 축소·이전 ····· 29
2. 회령 관리소의 폐쇄·이전 ····· 31

Ⅳ. 정치범수용소별 세부 운영실태 ····· 35
1. 개천 14호 관리소 ····· 37
가. 위치 및 구성 ····· 37
나. 인권 및 생활실태 ····· 39
2. 북창 18호 관리소 ····· 44
가. 위치 및 구성 ····· 44
나. 인권 및 생활실태 ····· 51

3. 요덕 15호 관리소 ····· 57
가. 위치 및 구성 ····· 57
나. 인권 및 생활실태 ····· 59
4. 청진 25호 관리소 ····· 64
5. 회령 22호 관리소 ····· 65
가. 위치 및 구성 ····· 65
나. 인권 및 생활실태 ····· 68
6. 명간 16호 관리소 ····· 74

Ⅴ. 정치범수용소와 인권침해 ····· 77
1. 정치범수용소의 인권 유린과 국제인권법 ····· 79
2. 국제사회의 우려와 대응 ····· 84
가.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 ····· 84
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보고서 발간 ····· 87
다. 반인도범죄 종식을 위한 활동 ····· 88

Ⅵ. 결론 ····· 91

참고문헌 ····· 95

부록 ····· 97
1. 통일연구원 북한인권DB(NKHR 북한인권DB)
정치범수용소 관련 증언 ····· 97
2. 정치범수용소 인권침해실태 증언 ····· 108

표 목 차

<표-1>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 주요 논문 및 보고서 ····· 4
<표-2> 정치범수용소 경험 탈북자 증언발표자료 목록 ····· 5
<표-3> 정치범수용소 추가 면담자 ····· 6
<표-4>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운영 및 관리 현황 개관 ····· 17
<표-5> 폐쇄된 수용소 현황 ····· 19
<표-6> 수용소별 수용규모 ····· 20
<표-7> 수용소별 사회복귀 가능 여부 ····· 37
<표-8>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인권 실태 ····· 75
<표-9> 북한의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현황 ····· 79
<표-10> 유엔의 북한인권결의 일지 ····· 85

그 림 목 차

<그림-1> 위성사진으로 본 개천 14호 관리소 ····· 39
<그림-2> 위성사진으로 본 구 북창 18호 관리소 ····· 50
<그림-3> 위성사진으로 본 개천 18호 관리소 ····· 50
<그림-4> 위성사진으로 본 요덕 15호 관리소 ····· 58
<그림-5> 위성사진으로 본 청진 25호 관리소 ····· 65
<그림-6> 위성사진으로 본 회령 22호 관리소 ····· 68
<그림-7> 위성사진으로 본 명간 16호 관리소 ····· 74

발간사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평화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후계체제의 등장과 함께 개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외부접촉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공안기관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 이래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여 북한의 인권실태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북한 내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 중의 하나는 정치범수용소이다. 이는 북한주민들의 정치적 저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개선촉구 압력은 북한 내 작은 변화들을 가져왔다.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침해 실상을 증언하는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증언, 관련보고서 및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의 북한지역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의 영역 및 수용규모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현황과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2012년 회령 22호 관리소가 폐쇄·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며,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규모가 8만~12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감소는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 지속으로 인한 사고·사망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보고서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3.1.20

통일연구원장

Ⅰ. 서론

1. 발간목적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북한당국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실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특별한 우려와 주목을 받아왔다. 또한 북한당국이 북한주민들의 정치적 저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정치범수용소를 활용하여 왔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북한사회 전체를 '거대한 정치범수용소'로 비유하기도 하였다.[1)]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침해상황을 발표하여 왔다. 15여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외부의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는 주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수집되어 왔다. 최근 국내입국 탈북자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북한인권침해실태 수집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정치범수용소의 특성상 실제 수감경험을 가진 탈북자는 극소수이다. 다만 정치범수용소 설치지역에 원래 거주하였거나, 가족 혹은 본인이 정치범수용소 관리직원이었던 경우, 가족 혹은 지인이 정치범으로 수감생활을 하다가 해명 혹은 석방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탈북자들이 적은 수이지만 지속적으로 입국하고 있다. 또한 정치범수용소 내부에서 생활한 경험은 없지만 인근지역에 거주하던 탈북자들도 관련된 정보들을 증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우리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

1) 프리덤 하우스, 「북한인권 국제대회-서울」 (Seoul Summit: Promot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2. 자료수집 방법 개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 및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기존 선행연구와 탈북자들의 증언이 담긴 단행본과 잡지 및 신문기사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입국 탈북자들 중 정치범수용소 수감 혹은 거주 경험을 갖고 있는 탈북자들 중 면접에 동의하는 7명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또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DB(NKHR DB)를 검색하여 정치범수용소 위치 및 수감자에 대한 증언들을 재분석하였다.

〈표-1〉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제 목	저 자	출판기관	출판연도
북한의 인권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공저, 송철복 외 역	아시아감시위원회	1988, 1990(번역본)
잊혀진 이름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시대정신	2004
북한인권 침해의 구조적 실태에 대한 연구: 정치범수용소를 중심으로	오경섭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북한정치범수용소의 인민통제효과	허선행	서강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 조사	북한인권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2010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운영체계와 인권실태	윤여상 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Summary of Amnesty International's Concerns on North Korea North Korea: New Information about Political Prisoners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1993, 1994
Hidden Gulag	David Hawk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
Hidden Gulag II	David Hawk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North Korea's Camp No. 22	Digital Globe Analysis Center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Digital Globe	2012

〈표-2〉 정치범수용소 경험 탈북자 증언발표자료 목록

	경험유형	증언자	경험시기	지역	증언자료 발표 형식
관리자 및 방문자	보위원/국가정치부 교육	강형순	1976~1977	-	-
	보위부정보원/12호 방문	김용준	1962.05 1978.09	-	-
	일본밀파간첩/11호 견학	신영만	1972	-	-
	수용소 경비원(11, 13, 22, 26)	안명철	1987.07~1994.09	-	-
	수용소 경비원(11)	최동철	1983.05~1986.02	-	-
수감 경험자	14호 출생	신동혁	1982~2005.01	전반적 실태	세상밖으로 나오다
	15호 가족수감	김영순	1970.10~1979.01	설립초기 실태	나는 성혜림의 친구였다
	15호 가족수감	강철환	1977.08~1987.02	입석리 수감실태	수용소의 노래
	15호 독신수감	안혁	1987.11~1989.02	대숙리 수감실태	대왕의 제전
	15호 독신수감	이영국	1994.01~1997.01	대숙리 실태	나는 김정일의 경호원이었다
	18호 독신수감	강명도	1992~1994	혁명화 실태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14호, 18호 수감	김용	1993.08~1995.10 1995.10~1998.09	14호 실태 18호 실태	-
	15호 독신수감	김태진	1988~1992	대숙리 실태	-
	15호 독신수감	김은철	2000~2003	서림천 실태	-
	15호 독신수감	김수철	2000~2003	서림천 실태	-
	18호	김혜숙	-	-	눈물로 그린 수용소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 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0), pp. 5~6.

〈표-3〉 정치범수용소 추가 면담자[2)]

관리소	이름	성별	출생 연도	관리소 수감/ 생활 기간	탈북 연도	입국 연도	비고
15호 함남 요덕	가○○	남	1965	1990~1994	2007	-	수감자
	나○○	여	1969	1978~1983	2002	2009	수감자
18호 평남 북창	다○○	남	1948	1975.12.20~1985.06	-	2007	수감자
	라○○	여	1946	1979~1989	2001	2008	수감자
	마○○	남	1960	1995~2006	-	2010	관리성원
22호 함북 회령	바○○	여	1967	1976~1982	2008	2008	관리원 가족
	사○○	여	1959	1976~1982	-	-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탈북자 증언 자료와 함께 위성사진을 통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변화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Hidden Gulag 등에 수록된 각 수용소의 좌표를 참고로 하여 국토해양부의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보았다. 각 수용소 내 시설 확인 및 전체 수용규모 파악과 동시에 철조망이 설치된 범위를 규명해 내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위성사진과 탈북자 증언의 교차점검을 실시하였다.

2) 본 이름은 가명을 사용한 것이다.

Ⅱ. 북한체제와 정치범수용소

1. 정치범죄의 의미와 북한 정치범수용소

정치범수용소란 '정치범죄'(political offence) 위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정치범죄에 대한 확립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정치범죄는 '절대적 정치범죄'와 '상대적 정치범죄'로 구분된다. 절대적 정치범죄란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등과 같이 범죄행위가 직접적으로 국가에 대한 것으로 일반범죄의 요소를 갖추지 않은 범죄를 말하며 '순수한 정치범죄' 또는 '객관적 정치범죄'라고도 한다. 이에 비해 상대적 정치범죄란 절대적 정치범죄 행위에 살인, 방화, 절도 등 일반범죄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3] 절대적 정치범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의미의 정치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적 정치범죄는 확장된 정치범죄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형법은 제3장에서 반국가범죄와 반민족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범죄들이 통상적 의미의 정치범죄, 즉 절대적 정치범죄에 해당하며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나머지 범죄들은 일반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특정 범죄행위가 반국가범죄 및 반민족범죄에 국한될 경우에는 절대적 정치범죄가 되며 반국가범죄 및 반민족범죄와 일반범죄, 양자 모두와 관련성을 갖는 경우 해당 범죄행위는 상대적 정치범죄가 된다.

정치범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정치범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정치범죄의 의미를 절대적 정치범죄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정치범의 규모는 작아지게 되며, 반대로 정치범죄의 의미를 상대적 정치범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정치범의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다.

---

3) 김한택, 『현대국제법: 이론과 사례연구』 (서울: 지인북스, 2007), pp. 412~419; 이만희, 『범죄인 인도와 국제법』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5), pp. 129~131.

북한 정치범수용소 운영 초기에는 주로 절대적 정치범죄 위반자들이 수용되었다. 북한은 1947년부터 집단수용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해방 직후에는 지주, 친일파, 종교인 등이 수용되었으며, 1950년 6·25 한국전쟁 이후에는 주로 치안대[4] 가담자가 수용되었다. 그리고 북한 정치범수용소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최창익·윤공흠 등의 반김일성 음모사건) 이후부터로 종파분자들이 수용되다가 나중에는 반김일성 분자 등을 수감하였다.[5] 최근에는 탈북 증가에 따라 남한행 기도와 남한주민 접촉 등에 대해 간첩죄가 적용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절대적 정치범죄 위반자들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사례도 있지만 상대적 정치범죄 위반자들이 수용되는 사례도 흔하다. 예를 들어 예배 등의 종교활동을 이유로 수감되는 사례, 가족이 탈북하여 남한으로 갔다는 이유로 수감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북한의 경우에는 일반범죄 위반자까지 정치범이라는 굴레를 씌워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인신매매[6]를 이유로 혹은 김일성·김정일의 비밀 창고 기름 절도 연루자를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였다.[7] 요컨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는 통상적인 의미의 정치범죄 위반자도 수감되지만 많은 경우 광의의 정치범인 상대적 정치범죄 위반자들이 수감되고 있으며, 정치범죄로 보기 어려운 일반범죄자들도 수감되고 있다. 청진 25호 관리소에는 주로 협의의 정치범들이 수감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북창 18호 관리소[8]에는 일반범죄 위반자들이 다수 수용되어 있는

---

4) 1945년 8월 16일 해방 직후의 정치적 공백상태의 혼란 수습, 치안확보, 개인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여운형이 설립한 임시경찰기구인 '건국치안대'를 말한다.
5)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115.
6)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탈북을 중개하거나 방조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처벌하여 왔다.
7)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2』(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133~135.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개천 14호 관리소, 요덕 15호 관리소, 명간(화성)[9] 16호 관리소에는 협의의 정치범죄 위반자와 광의의 정치범죄 위반자들이 함께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정치범관리소의 유형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운영 형태, 방법, 관리주체에 따라 마을형태와 교화소형태, 완전통제구역만 있는 관리소와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이 함께 있는 관리소, 수용자 혼자만이 거주하는 관리소와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관리소,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가 관리 주체인 관리소와 인민보안부(이하 '보안부')가 관리 주체인 관리소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마을형태와 교화소형태

대부분의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마을형태로 되어 있다. 외곽 철조망과 경계시설에 의해 일반 북한 사회와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을 제외하면 북한 내 농촌이나 탄광 등 일반 군과 유사하다. 그러나 특정적인 차이점은 일반 시·군과 수용소는 다른 규정과 제도에 따라 운영된다는 사실이다. 공민증을 박탈당하고 형법이나 형사소송법과 같은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소 규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사안은 수용소 수감자들이 노예와 같은 노동을 착취당하는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다는 점이다. 즉 수감자들은 인간

8) 18호 관리소는 북창에 있었으나 개천 지역으로 축소 이전하였다. 이하 본 보고서에서 '개천 18호 관리소'라고 할 때는 현재 운영 중인 18호 관리소를 말하며, '북창 18호 관리소'라고 할 때는 이전하기 전의 18호 관리소를 말한다.

9) 화성은 명간의 구 지명이다.

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반인도적 인권유린의 대상자로 전락된다. 수용소에는 학교와 병원, 수용자들의 주거지역과 탄광, 벌목 등의 강제노동 구역이 있고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성원의 주거지역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하나의 정치범수용소 내에는 여러 개의 마을이 있다. 개천 14호 관리소, 요덕 15호 관리소, 명간 16호 관리소, 개천 18호 관리소 등 현재 운영 중인 북한 정치범수용소 대부분이 마을형태로 되어 있다. 2012년에 폐쇄된 회령 22호 관리소도 마을형태로 운영되었다. 마을형태의 정치범수용소는 구 소련의 정치범수용소였던 '굴락'(Gulag)을 모방한 것이다. 굴락은 포로수용소, 노동수용소, 처벌수용소, 범죄자 및 정치범수용소, 여성수용소, 아동수용소, 이동수용소 등 구 소련 연방 전역에 걸쳐 존재했던 노동수용소 조직을 의미하는 데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수립 과정에서 구 소련의 굴락 시스템을 받아들였다. 굴락은 수용자들을 노동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범과 일반 범죄자들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수용했으며, 수용자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병들이 감시탑에서 감시하고 있었다.[10] 이와 같은 점들은 북한의 개천 14호 관리소, 요덕 15호 관리소, 명간 16호 관리소, 개천 18호 관리소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가운데 청진에 있는 25호 관리소는 다른 정치범수용소들과는 다르게 교화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청진시 '수성'이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화소 형태라는 점에서 흔히 '수성교화소'라고도 한다. 청진 수성교화소는 중국의 라오가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 라오가이(勞改)란 유죄판결을 받은 죄수들의 노동개조 형태 가운데 하나로 반혁명분자와 체제 위협인사를 억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0) 오경섭, "소련·북한·중국의 정치범수용소 비교: 정치적 기능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319~322.

노동개조란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 생긴 정치적인 용어로써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확산되었다. 라오가이는 중국공산당의 독재체제에서 중요한 조직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1] 그러나 청진 수성교화소는 중국의 라오가이와는 달리 재판을 거치지 않고 수감되고 있다.

나.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완전통제구역만 있는 수용소와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수용소의 두 부류로 구분된다. 완전통제구역이란 종신수용소로써 여기에 한 번 수용되면 다시는 북한 내의 일반 사회로 복귀할 수 없다. 이곳의 수용자는 광산, 벌목장 등에서 처참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결국은 수용소 내에서 죽게 된다. 이 같은 점에서 완전통제구역을 '종신구역'이라고도 한다. 완전통제구역 수용자들에게는 사상교육을 시키지 않고 채광 및 영농기술 등 생산에 필요한 지식만을 교육시킨다. 반면 혁명화구역 내의 수용자들은 일정기간 동안 '혁명화'라는 과정을 거친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다. 혁명화란 정치사상교육을 통한 일종의 정신개조를 말한다.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정신이 개조되었다고 판단되면, 다시 말해 혁명화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일반사회로 복귀시키는 곳이 혁명화구역이다. 혁명화구역 출소 시에는 수용소 내의 생활상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고 나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수용된다. 이들은 정치범수용소에서 출소된다고 해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하층 생활을 하게 되며, 보위부의 최우선 감시대상이 되어 직업·여행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받는다.[12] 혁명화구역에서 북한의 일반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11) 오경섭, "소련·북한·중국의 정치범수용소 비교: 정치적 기능을 중심으로," pp. 327~328.
12)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2』, pp. 125~126.

'해제'라고 하며 해제된 사람은 '해제민'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정치범으로 몰려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사람은 '이주민'이라고 한다.

현재 운영 중인 북한 정치범수용소 가운데 요덕 15호 관리소가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또한 데이비드 호크는 2012년 발간된 그의 저서 『The Hidden Gulag』(감춰진 수용소) 제2판에서 북창 18호 관리소에도 혁명화구역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13] 그리고 북창 18호 관리소에 수용되어 있다 만 27년 만에 탈북에 성공한 김혜숙은 자신의 수기 『눈물로 그린 수용소』에서 가축을 뇌물로 바쳐 2001년 2월 16일 김정일 생일에 수용소에서 해제(석방)되었으며, 자신이 해제 받을 당시 7세대가 함께 해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14] 이 같은 점들을 봤을 때 북창 18호 관리소는 한번 수감되면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와 사회복귀가 가능했던 경우가 병존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북창 관리소는 비록 혁명화구역이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혁명화구역과 유사하게 운영되었다. 청진 25호 관리소도 평생 수감되어 석방이 불가능한 경우와 형기(刑期)가 만료되면 출소가 가능한 경우가 병존하고 있다(<표-4>, <표-7> 참조).

혁명화구역에는 대체로 북한의 엘리트, 조총련 간부와 인연이 깊은 북송교포와 그 가족들이 수용된다. 북한 당국은 이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여 강제노동을 통한 육체적 고통을 가한 뒤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북한체제에 순응하게 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용자들은 완전통제구역에 수용된다. 완전통제구역에 수용된 사람 중 극히 일부는 완전통제구역에서 혁명화구역으로 이송되기도 한다. 또한 극소수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에서 언급된 특정대상이

13) David Hawk, *The Hidden Gulag, 2nd ed.* (Washington: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p. 69.
14)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서울: 시대정신, 2011), pp. 85~88.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해명되어 일반 사회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완전통제구역에 수용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 사회로의 복귀가 불가능하다.[15] 혁명화구역에 수용되어 있다가 출소할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본 것을 누설하지 말라고 서약하고 도장을 찍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혁명화구역에 재수용된다. 혁명화구역에서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이후에도 감시가 따른다. 그러나 일반 북한 주민들은 출소자가 혁명화구역 출신이라는 점을 알 수 없다. 공민증에 정치범수용소 출신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고 '조선인민군 경비대 로동자' 등으로 기재되기 때문이다. 혁명화구역에 수감되는 정치범은 일정기간 경과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다.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은 범죄의 죄질에 따라 여러 구역으로 구분된다. 요덕수용소의 경우 혁명화구역은 1년부터 5년까지 수용되는 구역, 1년부터 20년까지 수용되는 구역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완전통제구역은 경한 대상, 중한 대상, 완전히 중한 대상 등 3가지 부류의 수용자가 수용되는 구역이 있고 총살대상 수용자들의 구역이 따로 있다. 각각의 구역 내의 수용자들은 서로 만나지 못한다.

다. 단독수용 관리소와 가족동반수용 관리소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정치범만이 단독으로 수용되는 관리소가 있고 가족이 함께 수용되는 관리소가 있다. 청진 25호 관리소는 정치범 본인만 수용된다. 개천 14호 관리소와 명간 16호 관리소는 가족이 함께 수용된다. 요덕 15호 관리소는 정치범 본인만 수용되는 구역(독신자구역이라고 함)과 가족이 함께 수용되는 구역(가족구역이라고 함)이 별도로

15)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2』, pp. 126~127.

관리·운영되고 있다. 마을형태의 수용소의 경우 본인과 가족, 가족들만 수용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수감방식은 연좌제라는 반인권적 유린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위부가 예심절차를 관할한다. 그렇지만 가족의 경우 연좌제에 의해 수감되므로 예심절차 없이 체포 후 수용소로 수감된다. 따라서 수감 사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이혼절차를 통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용소에 수감되지 않는 사례로 파악되고 있다.

라. 보위부 운영의 관리소와 보안부 운영의 관리소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관리 주체에 따라 국가안전부위부가 운영하는 수용소와 인민보안부가 운영하는 수용소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운영중인 북한 정치범수용소 가운데 개천 14호 관리소와 요덕 15호 관리소, 명간 16호 관리소는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리하고 있다. 회령 22호 관리소에서 생활하다가 탈북하여 2008년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은 아버지가 정치범수용소에서 정치범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보위부 내의 9국이 정치범수용소를 관할하고 있다. 개천 18호 관리소는 인민보안부가 관리하고 있다. 청진 25호 관리소의 경우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리주체인지 아니면 인민보안부가 관리주체인지의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북한이탈주민 ○○○은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리주체라고 한다.

〈표-4〉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운영 및 관리 현황 개관

	개천 14호 관리소	요덕 15호 관리소	명간 16호 관리소	개천(구 북창) 18호 관리소	청진 25호 관리소
형태	마을	마을	마을	마을	교화소
사회복귀	불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족동반 여부	가족	본인·가족	가족	본인·가족	본인
관리주체	국가안전보위부	국가안전보위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3. 정치범수용소의 연혁과 규모

미 국무부가 한국전쟁 당시 노획한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집단수용소를 해방 이후 1947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해방 직후에는 악질지주, 친일파, 종교인 등이 수용되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주로 치안대 가담자가 수용되었다. 이와 같은 수용소가 오늘날과 같은 정치범 유배소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최창익·윤공흠 등의 반김일성 음모) 이후이다. 황장엽은 '통제구역'이 '8월 종파사건'에서 유래하였으며, 처음에는 종파분자만을 이곳에 보내다가 나중에는 반김일성 분자 등 정치범을 수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김일성은 "종파분자들은 머리꼭대기까지 잘못되어 있어 가족들과 함께 산간벽지로 보내 격리시켜 살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따라 1958년 말 평남 북창군 소재 득장 탄광지역에 통제구역이 최초로 설치되었다.

북한당국은 연안파 등 정적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처형을 면한 종파사건 연루자 및 그 가족들을 산간벽지에 집단으로 수용시켜 특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반당·반김일성 분자들에게 가혹한 보복을 가함과 동

시에 반김일성 분자들의 세력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1966년부터 1년 간 주민재등록사업을 통하여 100만 노농적 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성분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전 주민을 3계층 51부류로 나누는 과정에서 적대계층의 일부를 수용소에 수감시켰다.

초창기에는 수용소 면적이 한국의 면 단위에 해당하는 1개 리 정도에 그쳤으나, 1973년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3대혁명소조 활동이 시작되면서 수용소와 수용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 노동당 6차 대회를 통해 김정일이 당권을 장악한 이후 세습체제를 반대한 당·군·정 간부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특별독재대상구역은 최소한 4개소가 더 늘어나게 되었고, 1982년에는 8개 정치범수용소에 약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사회와 격리된 채 종신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이후 1980년대 말 동구의 붕괴로 자유와 개혁의 바람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특별독재대상구역은 더욱 늘어났다.

함경북도 회령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다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은 국가안전보위부 제7국 산하에만 10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있었으나, 중국 국경에 인접하여 위치가 탄로 난 함북 온성군 2개소와 평양에 인접하여 비밀탄로의 우려가 있었던 5개소는 폐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10개의 정치범수용소가 평남 개천의 '14호 관리소,' 함남 요덕의 '15호 관리소,' 함북 명간의 '16호 관리소,' 함북 회령의 '22호 관리소,' 함북 청진의 '25호 관리소' 등 5개소로 통·폐합되었다고 했다.

〈표-5〉 폐쇄된 수용소 현황

명칭	위치	폐쇄일시	폐쇄이유
11호	함북 경성 관모봉 아래	1989.10	김일성 별장 건설
12호	함북 온성 창평로동지구	1987.05	국경인접, 비밀탄로
13호	함북 온성 종성로동지구	1990.12	국경인접, 비밀탄로
26호	평양 승호구역 화천동	1991.01	평양인접, 비밀탄로
27호	평북 천마	1990.11	이유 불명

정치범수용소는 기본적으로 국가안전보위부가 관할하지만 일부 인민보안부가 관할하는 관리소도 존재하고 있다. 인민보안부가 관할하던 관리소는 17호, 18호, 19호, 21호, 23호 등 여러 개 존재하였다. 17호는 83년도, 23호는 89년 경 폐쇄되었다. 그런데 현재 모두 폐쇄되고 18호 북창 관리소만 존재하고 있다.[16]

그런데 2012년경 회령 관리소가 폐쇄되면서 현재 5개 수용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규모는 탈북자의 증언과 위성사진 판독 등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6개 정치범수용소에 15만 명에서 20만 명도 정도가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통일연구원『북한인권백서 2012』15만~20만 명, 2009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와 북한인권정보센터 공동주최 세미나 약 20만 명, 북한인권정보센터 약 13만 5천 명[17]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10월 16일 정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현황 보고서에서는 6개 수용소별로 구체

16) 북한이탈주민 마○○, 면접조사, 2012-10-12.
17) 윤여상 외,『북한정치범수용소의 운영체계와 인권실태』(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p. 120.

적으로 수용 인원을 추정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 약 15만 4천 명의 정치범이 수용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표-6〉 수용소별 수용규모

수용소	수용인원
평남 개천 14호 관리소	1만 5천 명
함남 요덕 15호 관리소	5만 명
함북 명간 16호 관리소	1만 5천 명
평남 북창 18호 관리소	1만 9천 명
함북 회령 22호 관리소	5만 명
함북 청진 25호 관리소	5천 명
합계	15만 4천 명

출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9.
* 신동혁은 14호 관리소 수용 규모를 5만여 명으로 추정

그런데 현재 15만 4천 명보다 대폭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첫째, 회령 22호 관리소는 폐쇄되고 그 시설은 일반사회로 환원되었고 일부가 명간, 개천, 요덕 관리소 등으로 분산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폐쇄 이후 새롭게 이전하지 않고 분산 배치되었다는 점, 그리고 분산 배치된 관리소의 수용능력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수용인원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북창 18호 관리소도 모든 지역이 해제되고 일부만 개천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이전 과정에서 약 2,000~5,000명 선으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전반적인 위성사진의 시설을 판독한 결과 수용소별 수용능력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수용인원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열악한 수용소의 환경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용소 운영초기에는 대규모 이주

자들이 발생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이주자들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탄광 등 내부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의 비율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수용자의 규모가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네 가지 변화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5개 수용소에 최소 8만, 최대 12만 명 정도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수용소의 수와 규모가 축소된 것을 북한당국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김정은 권력 승계 이후에도 북한은 여전히 체제에 위협이 되는 적대세력과 잠재위협세력을 사회와 격리하여 체제유지를 위해 정치범수용소를 존속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규모가 축소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무엇보다도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가운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수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용소 규정 등에 따른 처형 등도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수용소 내에서 가족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창 수용소에서 결혼에 대한 통제는 없지만 개천 수용소의 사례에서 보듯이 결혼도 통제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부부생활에서도 제약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수용소 내에서 출산에 따른 인원 증가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위와 같은 감소 규모에 상응하는 새로운 정치범들이 충원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초창기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대규모로 수용소가 만들어졌지만 일반사회의 철저한 통제와 유일지배체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새로운 정치범의 규모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4. 정치범수용소의 운영과 북한의 체제 유지

북한형법 제10조(범죄의 개념)에서는 범죄에 대해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라는 기준에서 북한에서는 범죄의 성격을 정치적 성격의 범죄와 일반범죄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범죄를 구분하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와 연관된 범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자본주의적 착취제도를 복구하려는 반혁명적대분자들에 의해 감행되는 범죄행위가 반혁명범죄이다. 반혁명범죄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저해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통해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유지하려는 인식은 형법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북한형법 제3장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제59조~제72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절 반국가범죄, 제2절 반민족범죄,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 방임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의 관할도 구분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수사관할), 제124조(예심관할)에서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수사 및 예심은 ‘안전보위기관’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안전보위기관은 국가안전보위부를 지칭한다.

실제로 정치적 성격의 범죄라고 판단되면 국가안전보위부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예심을 관할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관할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기소와 재판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27조(도재판소 관할)에서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사건의 경우 도(직할시) 재판소가 제1심 재판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인민재판소가 아닌 도(직할시) 재판소가 1심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려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형사소송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까지 이를 관장한 보위부원과 판사의 탈북 사례가 없어 구체적으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전체 법적 절차를 파악하기 어렵다. 수감대상자의 결정, 대상 수용소의 결정, 가족 동반 여부 결정,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 여부 등을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정치적 성격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와 예심의 관할을 넘어 정치범수용소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그만큼 정치범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체제유지적 인식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인민보안부에서 관할하는 특수형태의 관리소가 존재하는데, 운영형태도 다른 정치범수용소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인민보안부 관할 수용소도 수감자에 대한 비인권적 관리 실태는 정치범수용소와 유사하다. 또한 수시로 정치범수용소로 이관되는 사람도 있다는 점에서 준(準)정치범수용소의 성격도 일부 내포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연좌제를 적용하여 가족까지 수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건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위부가 예심절차를 관할한다. 그렇지만 가족의 경우 연좌제에 의해 수감되므로 예심절차 없이 체포 후 수용소로 수감된다. 따라서 가족들의 경우에는 수감 사유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리소로 불리는 정치범수용소의 법적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형법에 따르면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기본형벌은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1~1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30조에서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형법에 따르면 설령 북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수사, 예심, 기소, 재판을 거쳐 '교화소'에 수감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판결판정집행법'에도 "로동교화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로동교화소가 한다"(제25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관리소라는 구금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 공식 법률상으로 재판을 거쳐 인신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수용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관리소 운영 규정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까지 공개된 적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처벌한다는 데 더욱 반인권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정치범수용소 수감 절차에서 '연좌제'를 특별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까지 처벌하는 연좌제를 통해 체제에 대한 불만을 통제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탈북민'들은 이러한 연좌제로 인해 가족까지 처벌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혹한 처벌을 통한 체제유지는 처벌에 대한 '계급적 원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04년 형사소송법은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적과 우리 편 사이의 모순'과 '인민 내부의 모순'을 확실히 구별하여 '적과 우리 편 사이의 모순'에 속하는 반국가 범죄와의 투쟁에

서는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적대분자와 주동분자를 철저히 진압·분쇄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인민 내부의 모순'에 속하는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는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하는 계급노선을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범죄를 저지른 계급적 원수를 찾아내 핵심인물을 철저히 진압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계급노선 원칙인 것이다. 반혁명범죄의 경우에는 폭력수단인 형벌에 의한 법적 제재를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비노동계급적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와 전체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철저하게 옹호 보위하는 것이 형법의 계급적 본질이므로 이러한 계급적 본질로부터 반혁명범죄를 범한 소위 계급적 원수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처단해야 한다는 것이다.[18]

"사회안전기관들과 사법검찰기관들은 당의 정치적 보위자로서 당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그 집행을 감독하며 특히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해치려는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모조리 잡아내며 철저히 진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19]

이와 같이 북한당국은 사회주의 체제 유지, 특히 일인지배체제 유지에 장애가 되는 사람을 반혁명분자로 규정하고 가족까지 사회와 격리 수용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

18) 법무부, 『북한법연구(Ⅶ)-신형법』 (서울: 법무부, 1990), p. 47.
19)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70년 11월 2일, 『김일성저작집』, 제2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354.

Ⅲ. 정치범수용소 최근 변화 동향

6개로 운영되던 정치범수용소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즉 18호 북창 관리소의 경우 북창 지역은 모두 해제되고 일부가 개천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최근 22호 회령 관리소는 폐쇄되고 수용소 시설은 일반사회로 환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2호 회령 관리소에 수감되었던 일부 정치범들은 명간과 개천 등으로 분산 수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북창 관리소의 축소·이전

정치범수용소 변화 중 가장 특기할 사항은 기존에 평남 북창군 신흥리 및 삼포동 일대에 위치하였던 북창 수용소가 대폭 축소되어 개천 동림리 지역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이다. 북창 수용소에 소속되어 있던 봉창 지역은 원래 14호 관리소에서 관할하고 있었다. 1983년까지 14호 관리소는 평안남도 개천과 봉창을 포괄하는 지역에 위치했다. 그런데 1983년 14호 관리소는 대동강 위쪽으로 이동하고 대동강 이남의 봉창 지역은 18호 관리소로 관할이 이관되었다. 대동강을 경계로 위로는 '14호 관리소,' 아래로는 '18호 보안성 관리소'가 위치하게 되었다. 대동강 이남에 남아 있던 14호 관리소 시설은 18호 관리소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그 곳에서 생활하던 14호 관리소의 정치범들은 모두 대동강 위로 함께 이동하였다.[20]

> 14호 관리소가 가지고 있는 절반 구역을 18호 안전부가 떼서 관장하기로 되어 있었다. 1983년 10월 1일까지 18호 관리소로 이관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 김일성이 지시에 의해 탄광을 합해 북창화력발전소를 돌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라고 해서 인수인계 받게 되었다. 그 때 본인은 이주민이었지만 장비, 설비를 인수하기 위해 관리소 소장, 부소장급들, 참모기술진들과 함께 봉창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다○○).

20) 신동혁, 『세상밖으로 나오다』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p. 34.

> 북창 수용소에는 갈골갱, 보피갱, 명학갱, 득장갱, 물호천 청년갱, 심산갱, 명학갱, 장산갱 등 많은 탄광이 있었다. 이러한 갱들이 위치하는 지역이 차례로 해제되었다. 그런데 봉창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이주민들이 출입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다른 지역보다 토대가 나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이 봉창 지역이 마지막으로 해제되었고 일부는 개천으로 이전하였다고 한다(라○○).

이와 같이 18호 관리소가 관할하던 지역은 단계적 해제 과정을 거쳐 일반 시설로 환원되었고 여전히 해제되지 않은 이주민들은 개천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8호 관리소는 전체적으로 수용 인원이 축소되고 있다.

1차적으로 1985년에 대규모 해제가 있었다고 한다. 1985년 6월 많은 사람들이 해제되었는데, 이를 '마당해제'라고 불렀다고 한다. 여기서 마당이라는 넓다는 의미로 그만큼 많은 인원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때 북한이탈주민 ○○○도 해제되었다고 한다.[21]

관리성원으로 일하였던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1995년도에 북창 수용소 내에 이주민이 5만 명 정도 수용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시 4만 명을 해제하여 1만 명 정도로 이주민의 규모는 축소되었다. 수용소 전체 6개 지구 중 4개 지역이 해제되고 2개 지역만 이주민 지역으로 존속하고 있었다.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수감자에 대한 해제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1년 봉창지구를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해제지구로 하고 영등지구에 이주민을 모아놓았다. 이 당시 4천~5천 명 정도 남아 있었다. 그런데 2006년에 전부 개천으로 이전하였다고 한다.[22] 그리고 2009년 10월 16일 정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정

21) 북한이탈주민 다○○, 면접조사, 2012-09-14.
22) 북한이탈주민 마○○, 면접조사, 2012-10-12.

치범수용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창 수용소는 1만 9천 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2009년 기준 정부가 추정하여 발표한 1만 9천 명보다 훨씬 축소된 규모로 현재 2천~5천 명 정도의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2006~2007년경 북창 수용소는 개천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3] 구체적인 이전 지역과 관련하여서는 개천시 동림리 일대로 파악된다.

2. 회령 관리소의 폐쇄·이전

회령 정치범수용소는 2009~2010년경부터 이전이 시작되어, 2012년 5월경까지 수감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이관하고 폐쇄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2012년 국내입국 탈북자들[24]의 증언에 의해 확인되었다. 전거리 교화소 수감자였던 증언자[25]는 3~4년 전부터 철수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으며,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철수가 시작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2012년 5월 본인이 직접 회령수용소 지역을 방문해보니 철수가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2012년 5월 회령시 원산리 분주소에 구류되어 있었던 증언자[26]는 당시 보안원들이 회령수용소 폐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함북 회령시 출신의 증언자[27]는 회령수용소가 곧 철수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으며, 2012년 1월부터 내부 물건들(부식물, 석탄 등)을 판매하던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연로한

23) 북한인권정보센터도 개천으로 이전하였다는 증언과 함께 전체 규모는 2,000~3,000명 혹은 250세대×3배라는 증언을 소개하고 있다. NKDB, p. 132.
24) NKHR 2012-000161; NKHR 2012-000168; NKHR 2012-000185; NKHR 2012-000198 등.
25) 본 증언자는 2005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전거리교화소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NKHR 2012-000185.
26) NKHR 2012-000198.
27) NKHR 2012-000168.

사람들은 기존 관리소 구역에서 생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도 보고된다. 즉 수용소 지역이 회령시로 이관되면서 내부에서 일 잘하는 사람 혹은 가족들을 회령시가 인계받았다는 것이다. 22호 수용소가 철수되고 그 지역에 개인주택을 만들어서 집 없는 사람 중 선정하여 그 곳에 배정하기로 하였으며, 이 주택을 얻기 위해서 돈과 인맥들이 필요하다는 증언도 있다.

> 제가 올 때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계속 석탄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강냉이… 그 사람들도 그걸 팔고 가야지만이 살 수 있으니까 다 판데요. 그건 공개됐어요. 그리고 거기(회령관리소지역) 들어 갈… 한 세 개 리인가 네 개리인데 거기에 들어갈 인원을 모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낸다는 소리도 있고 한편으로는 모범적인 사람들, 각 농장들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거기로 보낸다는 소리도 있고(채○○).

2012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회령수용소 지역에 들어가 작업을 하고 온 북한이탈주민 신○○에 따르면 기존 수용소 지역에 '선군마을'을 꾸민다고 단련대 혹은 교화소 수감 경험 등이 없는 핵심적인 사람들을 각 리와 공장기업소에서 차출하여 이주시키는 것으로 파악된다.[28]

> 공장들이, 죄수들이 하던 시멘트 공장, 벽돌 공장, 전기 배선부, 그 다음에 무슨 차 수리소. 어쨌든 분야가 탄광… 이런 분야가 많았단 말입니다. 죄수들이 거기서 다 일하고 나왔으니까. 공장도 있고… 행영 거기 들어갔었는데 죄수들이 말하자면, 농사로 파종만 해놓고, 파종이라는 게 씨만 뿌려놓고 김을 못 매서 회령시 공장, 기업소 다 들어가서 밭을 맡아 가지고 김매기 하러 들어갔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밭을 관리를 못 했으니까 보름동안 거기 들어가서 시 당, 공장, 기업소 몽땅 들어가서… (신○○).

28) NKHR 2012-000258.

> 지금 이동하는 사람들은 현재 그 집에 들어가고.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부터 집을 다… 그러니까 우리네 함북도에 주둔되어 있는 9군단이 다 들어와서 집을 다 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시당에서 나와서 너네 기업소는 어디 가서… 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걸 철거할 때, 세대들이 들어갈 때, 거기 관리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다 발령했단 말입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무슨 작업반장, 기사장, 이런 거 다 발령했으니까. 어느 리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그런 식으로 다 임무를 주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찾아가니까 토조까지 떼어줘서 "이 토조는 너네 김매기 하고 끝나고 들어가라" (신○○).

이와 같이 다수의 증언이 회령수용소의 폐쇄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으나, 수감자들이 어느 규모로 어느 지역으로 이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수용소 내 물자 및 집기는 주간에 이동하였으나, 수감자들은 야간에 호송시킨 것으로 파악된다.[29] 미 북한인권위원회는 회령수용소 수감자 30,000명 중 3,000명만이 16호 수용소로 이관되고, 나머지 27,000명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통일연구원은 22호 수용소 수감자들이 16호를 포함하여 14호, 15호 수용소 등에 분산수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회령수용소를 폐쇄·이전한 주요한 이유로는 국경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정치범의 반동이 일어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국경에서 먼 쪽으로 이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범수용소를 건립하기 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른 정치범수용소로 분산하여 수감한 것으로 보인다.

---

29) NKHR 2012-000258.

Ⅳ. 정치범수용소별 세부 운영실태

〈표-7〉 수용소별 사회복귀 가능 여부

관할	수용소	수감 형태	신분 변경 가능 여부	사회 복귀 가능 여부
국가안전보위부	청진	감옥 형태	석방 가능	사회 복귀
			석방 불가	평생 수감
	요덕	혁명화구역	석방 가능	사회 복귀
		완전통제구역	석방 불가	평생 수감
	회령(폐쇄)	완전통제구역	석방 불가	평생 수용
	명간	완전통제구역	-	평생 수용
	개천	완전통제구역	-	평생 수용
인민보안부	북창 (개천으로 축소 이전)	이주민 (별도 구분 없이 수감)	해제민	해제민
			비해제민	평생 이주민

1. 개천 14호 관리소

가. 위치 및 구성

개천 14호 관리소는 국가안전보위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완전통제구역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개천 14호 관리소는 평안남도 개천시 외동리에 위치하고 있다.[30] 현재까지 개천 14호 관리소에서 탈출하여 입국한 탈북자는 신동혁이 유일한 상황이다.

> 단지 우리는 그곳에서 관리소의 규정을 지키고 살다가 생명이 다하면 죽음을 맞이할 뿐이다. 그런 곳을 이곳 바깥 사람들은 '완전통제구역'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30) 신동혁, 『세상밖으로 나오다』, p. 34.

> 관리소에는 가끔 죄를 짓고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관리소에서 형이 해제되어 나간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누구도 이곳에서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신동혁 37쪽).

개천 관리소는 보위부원 마을, 본 마을, 1호 골안, 2호 골안, 3호 골안, 4호 골안, 5호 골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소는 14호 관리소 내 보위원 마을은 100세대 정도 되는데, 1세대에 2가구가 모여 살기 때문에 즉, 보위원 200가구가 관리소 내에서 생활한다. 14호 관리소에 수용되면 공민증이 박탈된다. 14호 관리소는 '말하는 도구'라고 하지 인간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때려 죽여도, 쏴 죽여도 문제되지 않는다.[31]

14호 수용소 내 지역별 상황은 각 골안별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1호 골에서 일을 잘하면 본 마을로 나올 수 있다. 4호 골안, 5호 골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체 밖으로 나올 수 없다. 1~3호 골안에 사는 사람들도 4호 골안, 5호 골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 차단되어 있다. 1~3호 골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지만 4호 골안, 5호 골안에 있는 아이들은 골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32] 관리소에는 공장과 농장, 학교, 그리고 작은 병원을 제외하고는 안경점, 미장원, 가게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33]

---

31) 북한이탈주민 다○○, 면접조사, 2012-09-14.
32) 신동혁, 『세상밖으로 나오다』, p. 41.
33) 위의 책, p. 53.

그림-1 위성사진으로 본 개천 14호 관리소

행정구역: 평안남도 개천시 창동, 잠상리, 동창골 일대

나. 인권 및 생활실태

〈공민권〉

공민권이란 북한주민이 누릴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대표적이다. 14호 관리소에 수용되면 공민증이 박탈된다.

〈생명권〉

14호 관리소에서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처형 등 자의적으로 수감자들의 생명을 유린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래를 따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인다. 총알도 아깝다고 다른 수감자들로 하여금 몽둥이로 때려 죽이게 한다. 하지 않으면 본인이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몽둥이로 때리게 된다(다○○).

14호에서 수감자는 인간이 아니고 도구로 보니까 즉결 처분이 가능하지요(다○○).

〈가족권: 결혼과 출산〉

4, 5호 골안에서는 결혼도 안 되고 가족단위 생활도 안 되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본 마을과 1, 2, 3호 골안 아이들이다. 4, 5호 골안에서도 일을 잘하면 3호 골안으로 나올 수도 있다. 주로 4, 5호 골안에서는 최근 관리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잘 훈련받고 따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다음 3호 골안으로 나올 수 있다.[34] 결혼과 출산을 막지는 않는다. 일을 잘하면 보위부원에 의해 표창결혼이라는 방식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 남자는 25세 이상, 여자는 23세 이상으로 관리소에서 일을 잘하면 결혼을 할 수 있다. 결혼은 담당지도원이 일을 잘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짝을 맺은 다음에 명단을 보위부장(관리소 소장)에게 올리고 보위부장이 승인을 하면 되는 것이다.[35]

14호 관리소에서는 보통 일을 잘하면 한 달에 한 번 집으로 보내주었는데, 신동혁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더 열성적으로 일한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36]

〈주거〉

가족세대가 사는 곳과 독신세대가 사는 곳으로 구분되어 있다. 미혼은 배치 받은 작업반에서 기숙생활을 해야 한다.[37] 4호 골안, 5호 골안은 가족 단위로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개별적으로 생활을 한다.

〈건강권〉

관리소 내에도 병원이 있었는데, 8작업반과 9작업반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담당보위원 의사 1명과 죄수 중에 선발된 간호원 1명이 있었다.
관리소에서 아무리 심하게 다쳐도 절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관리소 내 병원에 가면 보통 식염수로 상처 부위를 씻어내고 일주일에 한 번 치료를 받으러 오라고만 한다.

---

34) 신동혁, 『세상밖으로 나오다』, p. 41.
35) 위의 책, pp. 63~67.
36) 위의 책, p. 46.
37) 위의 책, pp. 38~39.

이때도 작업반장이 승인해 주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손가락을 잘렸을 때 병원에 갔는데, 마취는 하지 않았지만 상처부위를 기워주고 치료도 받았다.[38]

〈식량권〉

배급을 받지만 늘 배가 고팠다.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나 공장에 다닐 때도 쥐가 있다고 하면 무서워 달아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쥐에게로 쏠린다.
우리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일은 쥐를 잡아서 구워 먹는 것이다. 나도 관리소에서 쥐를 많이 잡아먹었다. 쥐를 불에 살짝 구워서 껍질을 벗겨내고, 내장을 파낸 다음 소금을 뿌려서 바삭하게 굽는다. 그렇게 바삭 익힌 다음 쥐머리도 남기지 않고 뼈까지 다 씹어 먹는다.[39]

〈근로권: 강제노동〉

농장보다는 각 공장에 보위원이 더 많이 배치되어 있다. 작업반에 보위원이 배치되어 있지만 보위원은 전체적인 통제만 할 뿐 실제적인 작업지시와 관리는 총반장과 작업반장이 한다.[40] 관리소는 '연로보장'도 되지 않아서 노인들만 모여서 일하는 작업반이 따로 있어서 65세 이상 되면 그 반에서 작업을 한다.[41]

〈교육권〉

개천 관리소 내에도 학교는 운영되고 있다.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보위부원들이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학생까지 합하면 1,000명 이상의 학생이 관리소 내에 있었다. 그런데 14호는 소학교 4학년까지 밖에 없다. 중학교가 있지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동원하는 효율성 때문에 존재한다. 따라서 중등교육은 없다(마○○).

---

38) 신동혁, 『세상밖으로 나오다』, pp. 52~53.
39) 위의 책, pp. 47~48.
40) 위의 책, pp. 41~49; NKDB, pp. 123~124.
41) 위의 책, pp. 39~40.

14호 관리소에서는 인민학교 4학년까지 국어, 수학 2가지만 가르친다. 외국어도 가르치지 않고 신문도 못보고 졸업하면 그 다음부터는 12살부터 일을 해야 된다.
반면 관리성원 가족들이 사는 보위부 마을 내에 보위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별도로 있다. 학교 규모는 꽤 큰 편으로 3~4층짜리 건물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본 적이 없다. 보위원 자녀 학교를 근처에서 본 적은 있지만 들어가 본 적은 없기 때문이다.[42]

〈통제와 처벌〉

평생 동안 다시 일반사회로 나가지 못하는 완전통제구역에서 살고 있으며 일만 하는 노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철저한 통제와 탄압 속에 사상 교양 없이 노동력만 착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착취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사상교양도 없다.

우리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누구라는 것도 모르고 설날도 모르지만 보위원들이 쉬어야 하기 때문에 휴일이라고 생각했다(신동혁 45쪽).

다만 규정 학습만 계속 시킨다.

선생(보위부원)이 '몇항 몇조 뭐지?' '맞았어 통과' '거기 암기할 때까지 들어오지 마라'고 한다(다○○).

피복공장에서의 하루 일과를 보면 저녁 10시~11시, 한 시간 동안 '사상투쟁'을 하는데 하루를 총화하는 시간이다. 생활총화는 아니고 김일성, 김정일, 당의 방침도 이야기하지 않는다.[43] 14호 관리소는 집과 일터 사이를 왕래하는 과정에서 여러 곳에 걸쳐 확인 도장을 받게 하여 철저하게 이동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

---

42) 신동혁, 『세상밖으로 나오다』, p. 89.
43) 위의 책, p. 227.

> 집에서 나올 때부터 다섯 개가 정상적으로 찍혀야 작업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은 이전 도장 찍는 데서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맞아야만 도장을 찍어주지요. 이러한 방식으로 통제를 하지요(다○○).

특히 14호 관리소에는 '관리소의 10대 법과 규정'이 있다. 이러한 10대 규정에 의하면 모든 항목에 걸쳐 보위부원이 방침을 어길 경우 자의적으로 처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관리소의 10대 법과 규정〉

첫째, 도주할 수 없다.
둘째, 셋 이상 모여 있을 수 없다.
셋째, 도둑질을 할 수 없다.
넷째, 보위지도원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
다섯째, 외부인을 보거나 수상한 자를 보았을 시 즉각 신고해야 한다.
여섯째,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이상한 행동 발견 시 즉각 신고해야 한다.
일곱째,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는 넘쳐 수행해야 한다.
여덟째, 작업 외에 개인적으로 남녀 간에 접촉할 수 없다.
아홉째, 자신의 과오를 깊이 있게 뉘우쳐야 한다.
열째, 관리소의 법과 규정을 어겼을 경우 즉시 총살한다.

2. 북창 18호 관리소

가. 위치 및 구성

북창 수용소의 경우 표면적으로 '사회안전부 2918 군부대'로 명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민보안부가 관할하는 정치범수용소로,[44] 기존에 평남 북창군 신흥리 및 삼포동 일대에 위치하였다가 현재 개천 동림리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북창 수용소는 다른 정치범수용소와 달리 인민보안부에서 관할하는 수용소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국가안전보위부가 운영하는 정치범수용소와 일부 성격이 다르다. 북창 수용소 내 수감자와 전형적 형태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성격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수용소의 성격과 수감자의 법적 지위, 운영형태에서 일부 차이가 나지만 다른 정치범수용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성격을 가진 사람을 사회와 격리 수용하여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정치범수용소라고 할 수 있다.

북창 수용소에 수감되는 정치범에 대해 수용소에서는 '이주민'이라고 칭한다고 한다. 즉, 이주민은 북창 수용소에 수감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주민들은 후술하듯이 해제되지 못하면 외부세계와 완전하게 단절되어 생활해야 한다. 북창 수용소는 정치범이나 경제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토대가 나쁜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주, 자본가, 전쟁시기 만행자(치안대 가담자) 등 토대가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데 2000년대에는 정치범, 경제범도 아니고 일부 인신매매범들, 남한과 연계된 사람들이 소규모로 들어왔다고 한다.[45]

북창 수용소에 수감되면 평생 나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특수한 형태

---

44) 북한이탈주민 다○○, 면접조사, 2012-09-14; 북한이탈주민 마○○, 면접조사, 2012-10-12.

45) 북한이탈주민 마○○, 면접조사, 2012-10-12.

의 혁명화구역으로 되어 있다. 즉 언제든지 평가에 의해 이주민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북창 수용소에서는 평가를 통해 이주민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제'라고 칭하고 있다. 이주민에서 해제되면 '해제민'의 신분이 된다. 해제를 받으면 18호 수용소에서 보고 듣고 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한다.

이주민 신분에서 '해제'의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점에서 완전통제구역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옛날에 지주, 자본가 계급이라고 관리소에 수용했는데, 수용소에서 태어난 손자나 증손자가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로 인해 계속 이주민의 신분으로 있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생활 등을 고려하여 해제시켜 주게 된다는 것이다. 해제되는 기준은 행정부서장, 관리과장, 안전부 담당, 보위부 담당, 인민반 담당 등이 일차적으로 심사하고 다음에 관리과장과 행정부서장 비준이 되면 맨 마지막 책임비서가 최종 결정을 한다. 그 다음날 공민증을 가지고 안전부로 가서 새로운 공민증을 받는다. 공민증에는 혈액형이 표시되는데 이주민들은 검정색으로 표시되고 해제된 일반 공민증에는 빨강색으로 표시된다.[46]

이주민에서 해제되면 3가지 가능성이 있다. 수용소 내 별도의 해제민 구역으로 이사하여 살 수 있다. 아니면 그냥 살던 집에 살아도 상관없다. 이와 같이 해제민과 별도로 살 수 있지만 수용소 내에서 이주민과 해제민이 섞여 살아가고 있다. 같은 지역에 살아도 이주민에서 해제되면 통제가 약화되고 인민보안부로부터 출입증을 받아 외부 세계와 교류할 수 있다. 친척 집에 가거나 장사도 할 수 있다.[47] 이와 같이 이주

46)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 88.
47) 북한이탈주민 다○○, 면접조사, 2012-09-14.

민에서 해제되면 수용소 내에서 신분을 달리하여 계속 생활하거나 수용소 밖에서 살 수 있다. 해제되면 외부와 서신거래를 할 수 있고 외부에 여행을 갈 수 있는 자유를 얻지만 탄광지역에서 빠져나가기는 힘들다.[48] 수용소를 벗어나 일반 사회에서 생활하고 싶지만, 바깥 사회에서 멸시하기 때문에 수용소 내에서 살게 되는 해제민이 많다. 또한 관리소 바깥에서 해제민을 받겠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 쉽지 않다.

> '18호 관리소에서 왔어.' '저 놈은 제일 힘든 것으로.' '지금 너에게 줄 집이 없어.' '집을 짓고 살겠으면 살고 말라면 말라.' 이러는데 어떻게 사회에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못 나가는 것이지요. 사회에 나가 봐야 나를 누구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다○○).

> 1989년도에 해제된 북한이탈주민 ○○○도 해제된 이후 수용소 내에서 그냥 살았다고 한다(라○○).

이러한 해제민 선정 과정에서 부패 행위가 개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안원들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차리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거나 뇌물을 받고 '해제'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 수용소 어디를 가나 뇌물이 없으면 20년 또는 30년의 수용소 생활을 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열세살부터 체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예를 들어 돼지나 개를 길러 관리위원회에 바치면 강냉이 쌀도 받을 수 있는데다 모범가정으로 분류된다. 바치는 게 많을수록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김혜숙 61~62쪽).

그런데 요덕 수용소가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수용소로 운영되고 있다. 혁명화구역에서는 일

48) 북한이탈주민 마○○, 면접조사, 2012-10-12.

정기간 수용된 후 평가에 따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반면 완전통제구역에 들어가면 평생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은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북창 수용소는 평생 이주민의 지위에서 해제되지 못하더라도 완전통제구역이 별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별도의 구역에 대한 구분이 없는 가운데 해제될 수도 있고 평생 수용될 수도 있는 2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민이라는 신분으로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주민 중에서 수시로 선정되어 일부는 다른 정치범수용소로 이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혜숙의 경우 1975년 수용소에 갔을 때 친할머니로부터 보위부가 1974년 12월 7일 아버지를 데려갔는데, 소식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이후 김혜숙은 아버지를 북창 수용소에서 볼 수 없었다고 한다.[49]

> 1982~1983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잡혀갔다. 강연회 명목으로 모이게 하고는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면 그 옆에 있던 보위부원들이 순서대로 끈으로 연결해서 묶은 다음 자동차에 태워 갔는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부모님이 월남을 했거나 체제 비판 등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친인척들도 잡아갔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이들이 연좌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당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탄광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할 정도였다(김혜숙 45~46쪽).

> 매주 목요일마다 매 탄광마다 불만자들을 불러내 실어 간다. 그 때는 인간이 아니고 도구로 취급한다. 이들은 정치범수용소로 보낸다. 인민반에서 몇 지구 몇 반 김갑돌이 무슨 말 했다고 이렇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다○○).

49)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 18.

이를 통해 수용소 상호 간 수감자의 이동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민들이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노동력 보충과 함께 해제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제대군인들이 수용소 내 탄광 일에 많이 배치되었다. 특히 이주민들만 생활하면 저항할 수 있으므로 제대군인들을 배치하여 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탄광일이 힘들어 도망가거나 돈을 주고 나가려고 한다.[50]

> 1997년도에 500명 들어오고 한 3년 있다가 1,000명 들어오고 한 몇 년 있다가 또 1,000명 들어왔죠. 그래도 힘드니까 도망가는 군인도 많았어요(마○○).

그리고 관리성원은 '서학'이라는 지역에 별도의 독립된 마을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북창 수용소에는 '관리성원 + 제대군인 + 해제민 + 이주민'이 생활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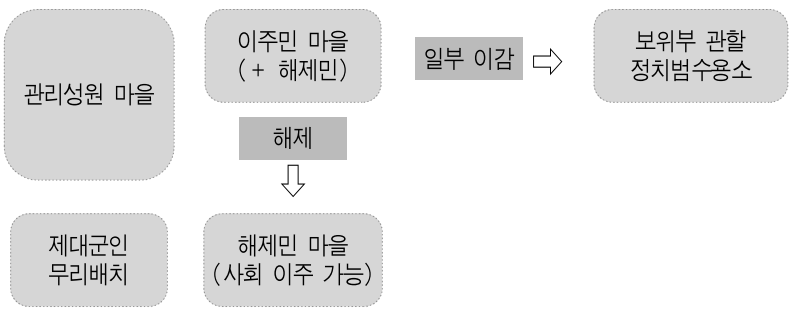

인민보안부가 관리하는 18호 북창 관리소는 정치범의 성격을 갖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안전보위부가 관할하는 일반적인 정치범수용소와는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18호 관리소는 수감 과정에서 가족이 알

50) 북한이탈주민 라○○, 면접조사, 2012-09-20; 북한이탈주민 다○○, 면접조사, 2012-09-14.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혜숙의 경우 외할머니 집에 기거하고 있을 때 1970년 부모, 남동생, 여동생이 수용소로 추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보안원이 김혜숙에게 계속 수용소로 보내야 한다고 추궁하였다. 결국 1975년 수용소로 보내지게 되었는데, 고모와 함께 갔다. 고모가 수용소 접수실에서 접수하는 것을 지켜 보았고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고모는 외할머니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51]

북창 수용소의 경우 공민증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사회와 마찬가지로 입당도 가능하며 생활총화와 조직생활도 영위하고 있다. 북창 수용소 관리성원이었던 북한이탈주민 마○○에 따르면 공민증도 유지되고 선거도 했는데 단지 외부와 단절되는 자유의 박탈, 강제노동을 제외하면 법적인 신분은 비슷하다고 한다.

> 다른 수용소 정치범과 이주민은 달랐는데, 공민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거도 잠깐 했어요. 오직 자유가 박탈됐어요. 외부와의 서신 거래, 외부를 나갈 수 없는 자유를 박탈했어요. 한 개 구역에서 노동을 시켰을 뿐이지 다른 거는 다 있었어요(마○○).

또한 입당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혜숙은 1984년 10월 초급당과 초급 사로청의 보증으로 당에 입당할 수 있었다고 한다.[52] 그러나 실제로 수용소 내에서 이주민들은 인간 이하의 멸시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주민과 해제민은 관리소 영역 내에 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주민들을 '말하는 동물'이라고 멸시하고 차별한다는 것이다.[53] 이러한 것들은 다른 수용소가 수용소에 수감되는지조차 모르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명백한 인권 유린이다.

---

51)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p. 15~16.
52) 위의 책, p. 60.
53) 북한이탈주민 라○○, 면접조사, 2012-09-20.

그림-2 위성사진으로 본 구 북창 18호 관리소

행정구역: 평안남도 북창군 세포동, 삼포동, 신흥리 일대

그림-3 위성사진으로 본 개천 18호 관리소

행정구역: 평안남도 개천시 동림리 일대

나. 인권 및 생활실태

〈공민권〉

북창 수용소의 경우 초기 이주민은 공민증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다른 수용소 정치범과 이주민은 달랐는데, 공민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거도 잠깐 했어요(마○○).

〈생명권〉

수용소 내에서 생명권 유린도 심각한 상황이다. 수용소에서는 일반 사회보다 공개처형이 빈번하게 집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공개 처형도 많다. 수용소에서는 이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한 달에도 여러 번에 걸쳐 공개처형이 실시된다. 특히 도주하면 예심도 하고 공개재판도 하지만 무조건 공개처형에 처한다.[54] 김혜숙에 의하면 김영숙이라는 여성은 점을 봤다는 이유, 정선화 부부는 도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을 당했다고 한다.[55]

〈가족권: 결혼과 출산〉

수용소 내에서 결혼과 출산에는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주민과 해제민 사이의 결혼도 가능하지만 대체로 꺼리게 된다. 이주민과 해제민이 결혼하게 될 경우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그 경위를 보고 이주민을 해제시켜 주거나 아니면 해제되었던 사람을 다시 이주민으로 신분을 바꾸게 된다. 이는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리성원과 이주민이 좋아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관리성원은 출당조치를 당하게 된다.[56]

---

54) 북한이탈주민 라○○, 면접조사, 2012-09-20;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 83.
55) 위의 책, pp. 54~55.
56) 북한이탈주민 마○○, 면접조사, 2012-10-12.

결혼은 자유로운데, 상대자가 해제될 사람인지 알아보게 되요. 안전원한테 찾아가서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겠느냐?' '너 알아서 해라.' '너 그 결혼하면 끝이야'라고 하면 종신이라는 거지(다○○).

〈주거〉

수용소 이주민들은 한 건물에 가구가 살도록 되어 있다. 각 세대별로 부엌과 방, 창문이 각각 하나씩 있다. 그런데 수용소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집은 습하고 사람이 살기 가장 어려운 곳에 짓도록 한다. 그리고 독신의 경우 합숙하는 곳이 별도로 있다.[57]

〈건강권〉

북창 수용소 내에도 병원은 운영되고 있다. 득장에 보피병원이 있으며 소규모 진료소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주민들의 경우 별도의 병원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이주민들도 이주민을 위한 병원에서 의사가 될 수 있다. 이들 의사들은 수용소 내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수용소에 수감되기 전 의사를 한 사람들이다. 이주민 의사들은 관리성원을 위한 병원에서 의사가 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이주민 의사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빨리 해제되려고 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려고 한다.[58] 해제민 구역에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에는 해제민 구역에서 근무하는 관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과로서 관리성원과가 따로 있다.[59]

해제민들은 관리성원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주민 병원에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관리성원 병원보다 이주민 병원에서 더 특혜를 받으므로 이주민 병원에 가려고 해요(다○○).

57) 북한이탈주민 라○○, 면접조사, 2012-09-20.
58) 북한이탈주민 라○○, 면접조사, 2012-09-20.
59) 북한이탈주민 마○○, 면접조사, 2012-10-12.

〈식량권〉

관리소 양정사업소 지도원을 했던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이주민에게도 식량은 배급하여 주고 있다.[60]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축을 길러 보충하면서 살아간다. 김혜숙은 동생들과 남편이 노임을 가져다주면 한푼 두푼 모아 돼지와 개, 토끼를 사서 길렀다고 한다. 그런데 훔쳐가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개, 토끼 같은 가축들을 집안에서 기를 수밖에 없고 가축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61] 그런데 식량 이외에 채소 등은 관리성원이나 안전원, 보안원에게만 공급되었다고 한다.

> 집에서 한 25분정도 걸어가면 농장 2반에서 관리하는 채소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채소는 관리일꾼이나 안전원, 보위원들에게만 공급됐다. 이주민들은 그 채소밭에서 재배되는 것을 감히 먹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김혜숙 69쪽).

이주민들은 배급을 받아도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에서 나물을 채취하거나 해서 연명하게 된다. 그런데 김일성 사망 이후 경제난은 수용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아사자들이 속출하였다고 한다.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배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당시 수용소에서 거의 천여 명이 넘게 죽어 나갔다고 한다.[62] 보피병원 옆에 장마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주민에서 해제되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여기서도 일반사회와 마찬가지로 금지 물품이 있고 단속을 하게 된다.[63]

---

60) 북한이탈주민 마○○, 면접조사, 2012-10-12.
61)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p. 61~64.
62) 위의 책, p. 73.
63) 북한이탈주민 라○○, 면접조사, 2012-09-20.

〈근로권: 강제노동〉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 아래 중앙에서 인력을 배치한다. 즉, 기본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지만 그래도 일반사회에서는 다양한 직종에 배치될 수 있다. 그런데 북창 수용소의 경우 이주민들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탄광으로 배치 받게 된다. 반면, 수용소 행정 간부들과 안전원(현 보안원), 보위부원의 가족들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탄광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한다.[64] 또한 똑같이 탄광에 배치되어 일을 해도 해제민은 갱 바깥에서 검탄을 하든가 쉬운 일을 하게 된다.[65] 이주민에서 해제되면 노동과에서 희망을 파악하여 직장을 새롭게 배치해주게 된다. 이주민들한테도 노임은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수용소 수감자와 관리성원 사이에 증언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수감자는 이주민과 해제민 사이에 배급과 노임의 차이가 있다고 한 반면, 관리성원은 차이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다만, 이주민들 사이에도 일하는 내용에 따라 채탄공, 굴진공, 운반공 등 일하는 내용에 따라 배급과 노임에 차이는 있다.

> 해제되면 집도 더 좋은 집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가서 살게 해줘요. 식량배급과 월급에서 이주민보다 우대해줘요(다○○).[66]

> 이주민들한테도 노임은 줘요. 그저 자유를 박탈한 거죠. 일하는 내용에 따라 채탄공이냐 굴진공이냐 운반공이냐 하는 거에 따라 하는 거지 이주민이라서 조금 덜 받고 이런 건 없어요. 배급도 똑 같아요(마○○).[67]

수감자들은 쉬는 날에 관리일꾼들과 안전부, 보위부 가족들을 위한 노력봉사에도 활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

64)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 32.
65) 북한이탈주민 라○○, 면접조사, 2012-09-20.
66) 다○○는 수감경험이 있다.
67) 마○○는 관리성원으로 근무하였다.

> 쉬는 날이면 탄광 보위지도원들이나 담당 안전지도원들의 집에 불려가 봄철이면 밭을 갈거나 감자를 심고, 농사철에는 김매기, 석탄이 떨어지면 석탄을 실어다가 창고에 들이는 일 등 별의별 일들을 해야 했다. 그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지 무슨 토를 달거나 뭉그적거리다가는 큰일났다(김혜숙 38쪽).

〈교육권〉

북창 관리소의 이주민의 경우에도 자녀를 위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주민의 경우 소학교(인민학교)와 중학교(고등중학교) 과정이 있다.[68] 지구별로 학교가 있는데, 교원은 해제된 사람과 안전원 가족들로 충원된다.[69] 그런데 해제민과 차별이 심하며 노동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 글자를 읽거나 기본적인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빨리 학교를 졸업시켜 탄광으로 보내 일하게 만들려는 느낌이 들었다(김혜숙 21쪽).

반면 이주민에서 해제되면 해제민 학교에 갈 수 있다. 이주민 학교와 달리 해제민 학교에서는 외국어를 가르쳐주고 졸업하면 무조건 탄광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장에 배치될 수 있다. 그리고 일부는 수용소 내에서 운영하는 야간 석탄전문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김혜숙은 추천받게 되어 야간 석탄전문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야간 석탄전문학교에서는 여러 탄광에서 우수한 노동자들을 선발하여 공부를 시켰다고 한다.[70]

---

68) 북한이탈주민 마○○, 면접조사, 2012-10-12.
69) 북한이탈주민 라○○, 면접조사, 2012-09-20.
70)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 60.

〈통제와 처벌〉

무엇보다도 관리성원에게 반항할 경우 가혹하게 처벌함으로써 통제하게 된다. 해제되면 안전원, 보위원에 대해 두고 보자고 앙심이 있지만 해제되기 전에 표현하면 내가 죽으니까 그러지 못한다.[71] 이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북한은 수용소 내에 '노동교양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양소는 일반사회의 교화소와 같은 수용소 내 별도의 수감시설이다. 수용소 내에서 도둑질하거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별도로 수감하게 된다. 특히 이주민들은 수용소에서 간부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노동교양소에 끌려가는 이중처벌을 받게 된다.[72] 이주민들은 대부분 힘든 노동으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무단결근이나 지각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무단 결근하면 노동교양소로 보내진다.[73]

> 일 안나가고 무단 결근하거나 도둑질이 적발되면 주조건 강제노동 하는 곳으로 보내요. 최소 60일 이상이예요(라○○).

수용소 내에는 '통보반장'이라는 감시제도를 두고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통보반장은 자신이 관할하는 지구에서 발생하는 일을 보안소에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제반장은 대개 해제민을 시킨다고 한다. 통보반장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주민들은 통보반장한테 잘 보여야 한다.[74] 그리고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배급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하루 결근 하면 1일 배급을 삭감한다. 그리고 3일 지각하면 하루 무단결근으로 보는 규정 있다. 따라서 지각을

71) 북한이탈주민 라○○, 면접조사, 2012-09-20.
72) 북한이탈주민 마○○, 면접조사, 2012-10-12;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 25.
73) 위의 책, p. 34.
74) 북한이탈주민 마○○, 면접조사, 2012-10-12.

세 번 하면 하루치의 배급표를 지급하지 않는다. 결근을 하면 배급을 주지 않는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배급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75]

또한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식량까지 1일분 공제한다. 반면 해제민은 이러한 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76] 이주민들은 해제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시킨다. 수용소 내에서도 생활총화, 당 문헌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식량삭감을 통한 통제는 이러한 생활총화 등과 연계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생활에 세 번 참가하지 않으면 본인과 가족까지 하루분 식량을 삭감한다.[77] 고된 노동과 통제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려고 해도 시도하지도 못하게 한다.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또 죽는다고 해도 반역자라면서 자식들과 부인들에게 압력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다.[78]

3. 요덕 15호 관리소

가. 위치 및 구성

요덕 수용소는 함경남도 요덕군 구읍리, 입석리, 용평리, 평전리, 대숙리 등 다섯 개 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덕군 전체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79]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혁명화구역 출신 탈북자 20여 명이 국내에 입국하여 다른 수용소에 비해 자세한 정보가 수집되어 있다. 입

---

75) 북한이탈주민 마○○, 면접조사, 2012-10-12; 북한이탈주민 라○○, 면접조사, 2012-09-20.
76) 북한이탈주민 다○○, 면접조사, 2012-09-14.
77) 북한이탈주민 다○○, 면접조사, 2012-09-14; 북한이탈주민 라○○, 면접조사, 2012-09-20.
78)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 47.
79) 강철환 증언, 국가인권위원회, p. 38에서 재인용.

석리는 가족혁명화구역이며, 대숙리와 구읍리(서림천)는 독신수감지역, 용평리는 가족수감지역으로 파악된다. 수용자들을 통제 및 관리하는 관리성원들은 성분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선발하며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 보위지도원들은 혁명화구역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후 토요일 자신들의 집에 갔다가 월요일에 혁명화구역에 출근한다. 보위지도원들의 집은 수용소 입구에 있다. 수용소 내 학교 교사(교원)들도 보위부 출신들이다.

그림-4 위성사진으로 본 요덕 15호 관리소

행정구역: 함경남도 요덕군 대숙리, 입석리, 구읍리, 용평리, 평건리 일대

나. 인권 및 생활실태

〈공민권〉

완전통제구역에서는 공민권이 박탈된다. 그러나 혁명화구역에서는 공민증이 박탈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 ○○○은 요덕수용소 내의 혁명화구역에 들어갈 때 공민증 직업란이 405경비대대에서 2915군부대로 바뀌었을 뿐 공민증을 박탈하지 않았다고 한다.

> 혁명화구역에 들어갈 때 공민증을 박탈하지 않고 바꿔줘요. 군인이면 군인증을 반납하고 공민증을 줘요. 내가 들어갈 때는 공민증 직업란에 405경비대대였는데, 2915군부대로 바뀌었어요(가○○).

〈생명권〉

혁명화구역에서는 수용자들이 노동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용자들을 함부로 처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주를 기도할 경우에는 공개처형을 한다. 반면 완전통제구역은 혁명화구역에 비해 통제의 강도가 높아서 수용자들이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즉결처형을 하기도 한다.

> 혁명화구역에서 막 잡아 죽이면 일할 노력이 없어지니까 함부로 죽이지는 않아요. 혁명화구역은 보위지도원이 즉결처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달아나게 되면 즉결처분 하죠. 종신구역에서는 불응하게 되면 바로 쏴버려요(가○○).

〈가족권: 결혼과 출산〉

완전통제구역에서는 부모형제라도 함께 살 수 없으며 떨어져 살아야 한다.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한다. 다만, 일을 잘 하면 한 번씩 만날 수 있다.

> 완전통제구역에서는 부모형제도 다 갈라놓아요. 보위원이 말해줬어요. 부모형제 다 갈라놓고 일을 잘 하면 한 번씩 만날 수 있어요. 결혼은 아예 안 돼요(가○○).

혁명화구역 내에서 미혼 남녀의 결혼은 금지된다. 미혼 남녀가 연애하다 적발되면 비판을 받는다. 출산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표창결혼'하여 아이를 낳기도 한다. 표창결혼이란 수용소 내에서 일을 잘하는 수용자에게 결혼을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용소 내에서의 노동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제도이다.

> 혁명화구역 안에서 결혼은 못해요. 그러나 생활을 반듯하게 잘 해서 표창으로 결혼을 시켜준 경우는 있어요. 아이도 낳아요(나○○).

아버지가 정치범으로 잡혀 혁명화구역에 수용되는 경우 자녀도 동반 수용된다. 아내는 이혼하면 수용소에 수용되지 않는다.

〈주거〉

혁명화구역은 가족세대와 독신세대가 별도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독신세대는 독신들끼리 집단생활을 하며, 농산반, 공업반 등이 있다. 가족세대는 수용소에 들어올 때 집이 주어진다. 집에는 부엌과 방이 있는데 방은 식구가 많으면 2개, 식구가 적으면 1개이다. 화장실은 밖에 공용 화장실을 사용한다. 가족세대도 공업반, 농산반 등이 있다.

〈건강권〉

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아프거나 다친 환자들을 치료는커녕 계속해서 노동을 해야 한다.

> 병원이 다 뭐예요. 뼈가 부러지거나 갈비가 상해서 쓰러졌는데도 일 시켜요(나○○).

병원 시설은 열악하다. 혁명화구역에는 전문 의사 없이 군인이 의사 노릇을 하기도 한다. 혁명화구역에서는 간단한 수술이 시술되기도 한다.

> 병원 같은 것은 말로 병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무 것도 없어요. 혁명화구역은 그나마 수술환자가 생기면 연락을 해서 의사가 올라와서 간단한 수술은 해줘요. 혁명화구역에 의사다운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내가 있을 때는 인민군 군인이 의사를 했어요(가○○).

〈식량권〉

가족세대는 가족별로 배급이 나오는데 옥수수, 옥수수 가루, 옥수수 국수 등을 배급받는다. 식량은 보름에 한 번씩 배급된다. 반면 독신세대는 독신들의 집단생활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독신세대들의 식량도 관리한다. 배급량은 수용자들이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한 달에 10일 먹을 정도 밖에 안 된다. 부족한 식량은 산나물 등으로 보충한다.

> 우리 시기 때는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달이면 열흘 먹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한테 "산에 가서 나물 좀 뜯어 와라" 라고 시켰어요. 아이들은 그래도 시간 좀 있거든요. 5년 동안 생활하면서 풀 뜯었던 생각 밖에 안나요. 산에서 풀을 뜯어오면 할머니가 데쳐서 풀밥을 먹었어요(나○○).

〈근로권: 강제노동〉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수용자들을 노동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킨다. 북한이탈주민 ○○○은 강제노동을 강요받은 수용자들을 '일하는 개미'에 비유하고 있다. 강제노동에 불참할 경우 비판 등의 제재를 받는다.

우리 부모는 혁명화구역에서 농장일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일을 하셨어요. 새벽 4~5시에 나가 밤 11~12시에 들어오셨어요. 조금만 아파서 못나가거나 지각하면 비판 받는 모습도 보고요(나○○).

거기 사람들은 인권이 따로 없어요. 말 그대로 일하는 개미들이죠. 자기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끌려와서 고생하고 있어요(나○○).

〈교육권〉

혁명화구역에는 소학교(우리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우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는 반면 완전통제구역에는 소학교만 있다. 학생은 많지 않다. 혁명화구역에서의 결혼이 금지되는 탓에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오전에만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일을 한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 강도는 높다. 혁명화를 마치면 사회에 복귀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신구역에는 소학교까지만 있어요. 오후에는 아이들도 나가서 일해야 돼요. 혁명화구역에는 소학교, 중학교 다 있는데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결혼을 못하니까, 들어올 때 데리고 들어온 아이들만 있죠(가○○).

오전 수업은 똑같아요. 공부는 매우 강해요. 숙제를 못하고, 질문에 답을 못하면 매를 맞았어요.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야 하니까(나○○).

〈여성권〉

임신한 상태로 요덕수용소에 들어오는 경우 출산하지 못하게 한다. 북한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의 자식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임신한 상태에서 들어온 경우 아이를 낳게 한다는 상반된 증언도 있다. 정치범수용소에서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산을 허용한다고 볼 수 있다. 임신 상태로 수용소에 들어오는 여성의 출산 허용 여부는 시기에 따라, 그리고 죄질의 경중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 임신해서 수용소에 들어오는 경우 아기를 낳지 못하고 처벌을 받게 되요. 남자는 감옥을 가게 되고, 여자는 수용소 밖에서 의사가 올라와서 수술을 해요. 북한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의 자식인데, 그걸 왜 키워요(가○○).

> 결혼해서 들어온 가족은 애기를 낳을 수 있어요. 제가 봤어요. 독신세대는 결혼 못하고요(나○○).

〈통제와 처벌〉

북한 주민들은 '생활총화'라고 해서 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다. 생활총화는 당원만이 참여하는 당원 생활총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직업동맹(흔히 직맹이라고 함) 생활총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흔히 사로청이라고 함)이라고 하는 청년 단위 조직의 생활총화 등 주민들의 소속에 따라 별도로 실시한다. 혁명화구역에서도 생활총화를 통한 사상교육이 시행된다. 북한 내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로 조직별로 당 생활총화, 사로청 생활총화, 직맹 생활총화가 실시된다. 완전통제구역에서도 생활총화는 실시된다.

> 혁명화구역에서 생활총화는 당 생활총화, 사로청 생활총화, 직맹 생활총화 처럼 조직별로 따로 있어요. 종신구역도 총화 같은 거 해요(가○○).

아이들의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아이들을 구금하여 사상교양을 시키는 별도의 시설이 있다. 이 시설을 '소년 교양대 감옥'이라고 한다.

> 학생 때 싸움을 해서 심하게 다쳐서 살인미수가 됐거든요. 어린 나이니까 감옥은 아니고… '소년 교양대 감옥'이 따로 있더라고요(나○○).

요덕 수용소에서 나간 이후에도, 즉 해제된 이후에도 보위지도원들이 감시를 한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요덕 수용소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공민증에 '조선인민군 경비대 로동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군 제대해서 노동자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 청진 25호 관리소

청진 25호 관리소를 탈출하여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없는 관계로 청진 25호 관리소의 구체적인 실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곳의 실태를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운영 실태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청진 25호 관리소는 다른 정치범수용소들과는 달리 교화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 경제사범은 수감하지 않고 정치범만 수감하는데 재판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형기(刑期)가 정해져 있어 형기 만료 후 석방되기도 한다. 가족은 수감되지 않고 정치범 본인만 단독 수감된다. 청진 25호 관리소는 1950년 6·25 한국전쟁 종료 이후 포로수용소로 사용되다가 후에 정치범수용소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 청진 25호 관리소는 6·25 끝나고 포로수용소였어요. 유엔군 포로수용소였는데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보낼 사람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후에 정치범수용소로 바뀌었어요(가○○).

그림-5 위성사진으로 본 청진 25호 관리소

행정구역: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수성동

5. 회령 22호 관리소

가. 위치 및 구성

회령 22호 관리소는 함경북도 회령시 행영리, 중봉리, 낙생리, 굴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3년경에 설립되어 1990년에 확대되었으며 2012년 현재 폐쇄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확한 설립시기에 대해서는 증언들이 엇갈리고 있으나, 회령군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정치범들을 이주시켜 수감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증언에서와 같이 설립초기에는 회령군 6개 리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감하였으나, 이후 수감자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일부 리를 사회에 편입시키게 되었다. 22호 관리소의 철저한 경비를 위해 철조망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위 '함정'이라는 별도의 장치를 통해 탈주를 차단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행영리에 본부가 소재하고 있으며, 대규모 관리성원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봉리에는 대규모 탄광이 소재하고 있다.

내가 어릴 때는 2922군부대라고 했어요. 이때가 1976년 그 때죠. 22호 관리소가 1975년도에 창립되었을 거예요. 1976년에 청진에 살다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고향은 청진인데, 아버지가 대남공작을 했어요. 거기가 노출되어 해산된 다음에 여기에 배치된 거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엄청 골안에 있었어요. 22호라는 것은 많은 리를 가지고 있어요. 행영리, 굴산리, 중복리, 락생리, 두 개가 더 있어요(바○○).

굴산리, 중봉리, 용계리, 락생 쪽으로 나가게 되면 창평쪽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창평이 해산되면서 락생쪽으로 모든 시설을 옮긴거예요. 창평이 해산된 게, 엄청 오래됐죠. 여기가 행영리, 굴산, 중복, 용계, 락생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바○○).

22호 하면 저는 제일 기억에 떠오르는 게 '함정,' 이 있어요. 여기가 22호라고 하면 여기를 둘러싸고 함정이, 이렇게 딱 파져있어요. 못 나와요. 거기서 절대. 22호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앞 지대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지리를 모르잖아요. 지리를 알면 바로 나오면 두만강인데 넘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도망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사○○).

울타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둘러싸면 함정을 깊이 파요. 한 깊이 3m 정도? 그리고 거기는 함정을 파면 공간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나무를 얼기설기 놔요. 이게 함정이라는 걸 안 알리게 나무를 이렇게 놓고 풀 같은 거 얼기설기 다 올려놔요. 그러면 그게 조금 오랜 세월이 되면 나무 이파리가 또 떨어지고 이런 풀들이 막 나요. 그게 함정인 걸 몰라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게 무게를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러면 푹 빠지기 때문에 짐승들이랑 많이 빠지거든요. 그런 함정을 다 둘러쳐놨기 때문에 절대 못 나가요(사○○).

함정이라는 것은, 리가 있잖아요. 이게 사거리라면, 이 본부에서 묘하게 이렇게 갈라져 나가요. 이것을 철조망 쳐야죠. 이 둘레로도 함정을 파야죠. 땅에 빠지게 안보이게 덥어 놓죠. 매 리마다 초소가 다 있죠. 초소를 거쳐야 선생들도 나갈 수 있죠. 엄격한 거죠(바○○).

1976년도. 그 때 다 정리를 해서 내보내고. 1975년도, 1976년도 이 때 막 정리를 다 해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나가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어떤 데다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밀집해놨냐 하면 담배건조실, 담배건조장 있죠. 북한은, 우리 살던 곳은 담배가 주로 많이, 담배농사를 많이 해요, 거기는. 그러면 거기 담배건조장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막 잡아넣어 둔 거에요. 그리고 문을 딱 잠그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실어 들여올 때 산골이잖아요. 정

말 오불꼬불 이런 산골에 들어오는데 차가 이렇게 어길 수도 없는 이런 도로에요. 들어오는 데가. 정말 어기려면 어느 쪽으로 가서 이렇게 대피하는 데 있고 이러면서 들어오는 데인데 차들이 이런 번호 없는, 넘버 없는 차들이 탁 들어와서 그 사람들 들여놓고 나가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 실어서 내어 갈 때는 다 번호 있는 차들이 들어오잖아요(사○○).

초기에는 이주민들 중 죄가 해명되어 석방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혹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온 경우… 그게 해명될 경우가 많아요. 들어올 때도 풍차. 나갈 때도 풍차로 나가요. 위치를 모르게 하려고, 트럭에 풍을 씌우는 거예요. 천막 같은 거죠. 나갈 때는 김일성이 초상화를 안고 나가는 거예요(바○○).

관리성원의 가족으로 22호 관리소에서 생활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 수감자들을 보면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당국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수감자들을 비하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관리성원과 수감자 간의 상당한 갈등의 여지가 있으며, 보안원들은 총을 휴대하고 수감자들로 인한 신변위협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밤에는 그거 감독 같은 게 집을 다 지킬 순 없잖아요. 근데 뭐 일단 도망은 안 갑니다. 도망은 안 가는데 간혹 그런 사고는 많이 나요. 왜? 그 사람들도 좀 머리가 똑바로 박히면 '나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이럴 바에는 내 너라도 하나 죽이고 나 죽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그냥 시키는 일 구석구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키는 보위위원들 막 죽이고 이런 사고가 엄청 많이 나요(사○○).

그림-6 위성사진으로 본 회령 22호 관리소

행정구역: 함경북도 회령시 낙생리, 행영리, 남석리 일대

나. 인권 및 생활실태

〈공민권〉

회령 관리소 역시 공민권이 박탈된다.

> 사람으로서 권리를 박탈당한 거죠. 공민증이 없는 거죠(바○○).

〈생명권〉

수용자들을 노동력으로 간주하여 함부로 죽이지는 않는다. 대신 수용소 내의 감옥에 수감하여 큰 고통을 가함으로써 수용소 내 다른 수감자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이를 수용소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 죽이지는 못하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력이 아까우니까. 감옥에 들어가 봐요. 그 고통을 받게 만드는 거죠. 일반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거죠. 말을 잘못하면 영원히 못나오는 곳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공포를 주는 거죠(바○○).

〈가족권: 결혼과 출산〉

회령 관리소도 다른 관리소와 동일하게 자녀출산은 억제한 것으로 파악된다. 내부에서 표창형식으로 결혼을 시키지만, 대부분 근무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사실상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통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결혼은 시키는데 자식은 못낳게 하죠. 종자를 말리는 거죠(바○○).
>
> (아이들이 졸업하면) 독신으로 나가서 직장생활 하죠. 결혼은 시키는데 아이는 못낳아요. 임신하게 되면…(바○○).
>
> 가만히 보게 되면 똑똑한 사람만 시켜주지. 표창이 결혼인거지(바○○).
>
> 결혼이 아니고, 표창으로 부부가 하루저녁 같이 재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절대 그 안에서 애를 마음대로 못 낳습니다. 애가 생기면 낳지요.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계속 밖에서 (사람들을) 들여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끔씩 나오고, 어느 정도 크잖아요. 결혼할 정도 되면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 또 아까처럼 이렇게. 절대 같이 계속 부부생활을 안 시켜요. 그 안에서는(사○○).

〈주거〉

초기에는 주거시설로 기존의 주택들을 사용하고 이후에 관리성원과 수감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별도로 건축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감자들의 숙소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습지 등에 지어졌다는 증언과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지역에 지어졌다는 증언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넓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각 리 별로 주거환경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관리소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형태로 개인 세대별 숙소는 취사시설과 침실이 동일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 1976년도 처음 들어갈 때, 일반 사람들이 살던 집이니까 항상 기울어져 있었어요. 한 2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집들을 다 허물고 사택을 한 곳에 몰아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사택을 지어줬어요. 집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겉모습은 반듯해요. 초창기에는 우리도 너무 한심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 집을 다 허물고 선생은 선생 집을 따로 짓고, 그 사람들 집은 그 사람들이 지었어요(바○○).

〈건강권〉

관리소 내 병원은 초기에는 수감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없이 관리성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만 병원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수감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시설이 본격화되면서 관리성원과 수감자의 거주구역이 완전히 분리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수감자를 위한 병원에는 의사출신의 수감자가 근무하게 되었다.

> 안에 병원시설은 따로 없어요. 우리 관리하는 선생님이 가서 수술해 줄 걸. 한 병원에서 하는 거겠지. 그런데 죽으면 아무데나 묻어버려요. 장례는 해 줄 수가 없지(바○○).

> 수감자 병원하고 관리자들이 쓰는 병원이 따로따로 엄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의사도 그 사람들이, 수감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는 수감자에요(사○○).

〈식량권〉

수감자들에게도 지속적인 노동력 착취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 제공 차원에서 임금과 배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자유권 박탈로 인해 월급도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으며, 배급량도 최저 생존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월급도 줘요. 안 줄래야 안줄 수 없어요. 기름 다 주는 거예요. 쓸데가 없으니까 월급은 통장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김일성이 살았을 때에는, 그 사람들도 공급을 받았어요. 자유만 없다 뿐이지… 그러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1997~1998년, 일반 사람들은 못 먹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활이 엄청 좋았어요. 공급이 정상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생활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까지 있었는지 알아요.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우리 형님도 데리고 들어왔을 걸"(바○○).

회령 식료품공장이 있어요. 술도 생산하고 당가루도 생산하고, 생산하는게 엄청 많아요. 피복 이런 것은… 미싱같은 것을 해서 만들어요. 피복공장 같은 것이 아니라, (가내수공업 규모) 지금은 현재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 같은 것을 가져다주게 되면… 후방과에 속하게 되는 거죠. 후방과에서 똑같이 배급을 타서 먹죠(바○○).

〈근로권: 강제노동〉

다수의 탈북자들은 회령 22호 관리소의 생산물자가 매우 다양하고 품질 면에서도 우수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는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물자들로 농산물, 군대의복, 석탄 등으로 다양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중봉은 탄광이 엄청 큰… 행영에 기본 본부가 들어가 있고. 여기 이런 데는 다… 굴산은 그냥… 이게 다 농경지에요. 산이 높아 벼가 안 되니까. 벼농사가 없어요. 콩, 옥수수, 배 과일 많이 심었어요. 그 쪽에는 백살구 외에는 별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사을리는 다 농경지에요(사○○).

여기(행영)는 본부, 장공장. 공장들이 일단 많이 있고. 다른 데는 있긴 있어도 여기에 기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중봉탄광은 어디랑 연결이 되는가 하면요. 세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세천으로 해서 철길로 이렇게 탄이 왔다 갔다 하거든(사○○).

장공장, 된장 만드는 장공장, 피복공장, 목장, 돼지, 닭 치는 공장, 그리고 정미소가 엄청 크게 있어요. 가공공장이, 그게 엄청 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있을 때는 거기까지 알고, 나중에 피복공장이 생겼고…(사○○).

수감자들에 의해 대규모 물자가 생산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관리소는 강제노동을 위한 시설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지속적인 노동력 착취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들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 그 사람들도 거기를 만들었을 때에는 그냥 그 사람들 죄수처럼 가둬놓는 게 아니라 무언가 생산을 해갖고 사회에 내보내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공장들이 있는데 그걸 운영하자면 그 사람들 다 가둬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사○○).

〈교육권〉

관리소 내에서 교육실태를 살펴보면 관리성원과 수감자 거주구역이 분리되어 있으며, 학교도 분리되어 운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수감자의 자녀들은 부모의 죄과로 인해 처벌받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민학교 교육만을 받으며, 언제나 관리성원 혹은 관리성원의 가족들에게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도록 강요당한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처음에 김일성이 살아있었을 때는 교복이 있었어요. 각 리마다 학교가 있는 거예요. 관리성원 구역에 한 개 학교에 인민학교, 중학교 다 있는 거예요. 교육은 시키는 거죠(바○○).

> (수감자 구역) 학교는 초등학교까지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교사는 그 사람들이 교사를 안 써요.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서 교사는 해요(사○○).

> 농사 과목도 들어가고, 수학도 들어가요. 바깥세상에 대해서는 모르게 하는 거죠. 국어나 수학, 자연 이런 것도 배우겠죠(사○○).

> 버스타고 지나가다가 학교에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참 불쌍하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버스가 지나가면 깍듯하게 머리 숙여 인사하는 것을 보면, 안쓰러운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자식들을 보면 또 부모를 잘못 만나서 여기 들어왔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처음 들어갈 때는 지주, 지주자식들은 북한에서 적대계급으로 치잖아요. 자식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똑똑하게 놀았으면 뭐 하러 들어

와요. 어떻게 보면 조상을 잘못 만나서 들어온 사람 많아요…. 거기 똑똑한 사람, 재간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물쇠를 깎는 것을 보면 묘하게 깎아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첫 총알 대상이라고… 자체적으로 다 쏴버리는 거지.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등 돌릴 사람들이니까(바○○).

〈통제와 처벌〉

회령관리소 내 통제를 위해서 관리성원의 감시와 함께 수감자 중 반장을 지명하고 이를 통해서 자체적인 점검 및 보고를 병행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는 말 그대로 생활이 힘들다기보다 자유가 없고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초창기에 지주자식, 성분이 나쁜 사람들, 그 후에는 말을 잘못해서… 김일성을 비방한다든가 나라를 적대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정치범들만 가죠. 그런데 생활은 다 (보장해) 주죠. 배급이라는 게 옥수수 줘요. 일을 시켜야 하니까… 이게 1970~1980년대나 똑같은 거죠. 김일성 사망 이외에도 이 체계는 바뀌지 않아요. 먹여야 일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서도 회사 생활할 때 밉게 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도 똑똑하면 좋은 자리를 타는 거고, 내가 부실하면 땅을 두지고 천대를 받는 거죠. 정치범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은 반장을 시켜요. 반장이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죠. 인원점검도 하고 보고도 해요(바○○).

제일 강조하는 게 "절대 말을 하지 말라. 접촉을 하지 말라" 이게 그 사람들(군인들)이 우리한테 주는 교육이거든. 왜? 언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접촉을 못 하게 했어요. '그래. 너네 반역자이기 때문에 여기로 왔지' 그냥, 왜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너네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왔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북한은 그런 적대계급 그런 걸 엄청 세게 강조하잖아요(사○○).

6. 명간 16호 관리소

16호 수용소는 함경북도 명간군 부하리 일대에 소재하고 있으며, 가족단위 수감시설로 알려지고 있다. 22호 수용소의 수감자들 중 일부도 16호로 이관되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6호 수용소 수감자 출신 탈북자가 없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인적정보의 수집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16호 수용소가 다른 수용소와 비교했을 때도 매우 엄격하게 통제·관리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그림-7 위성사진으로 본 명간 16호 관리소

행정구역: 함경북도 명간군 중평동, 가리동, 부화리 일대

〈표-8〉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인권 실태

관리소 / 권리	개천 14호 관리소	요덕 15호 관리소		명간 16호 관리소	북창 18호 관리소	회령 22호 관리소	청진 25호 관리소
		완전통제 구역	혁명화 구역				
공민권	박탈	박탈	유지	박탈	유지	박탈	박탈
가족권	-	부모형제 별거	-	-	-	-	-
결혼	금지, 표창결혼	금지	금지, 표창결혼	금지, 표창결혼	금지, 표창결혼	금지, 표창결혼	금지
출산	-	금지	예외적으로 인정	-	예외적으로 인정	예외적으로 인정	-
병원	-	-	존재, 시설 열악	-	-	존재, 시설 열악	-
전문의사	-	-	부존재	-	-	부존재 수감자	-
수술	-	-	간단한 수술	-	-	-	-
배급	절대 부족	-	절대 부족	절대 부족	절대 부족	절대 부족	-
교육	소학교	소학교	소학교 중학교	소학교	소학교	소학교	-
임신여성 출산 허용	유동적	-	유동적	-	유동적	유동적	-
생활총화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처형	도주 기도시 공개처형	불응시 즉결처형	도주 기도시 공개처형	도주 기도시 공개처형	도주 기도시 공개처형	도주 기도시 공개처형	-

Ⅴ. 정치범수용소와 인권침해

1. 정치범수용소의 인권 유린과 국제인권법

북한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사회권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의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그리고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대부분의 규정이 국제관습법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80] 북한은 국제관습을 국제법의 연원(淵源)으로 인정하지 않았었으나 태도를 바꿔 국제관습규범도 국제법의 연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국제관습법도 국제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81]

〈표-9〉 북한의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현황

조약명	채택 및 발효연도	북한 가입일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채택: 1948.12.09 발효: 1951.01.12	가입: 1989.01.31 발효: 1989.05.0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 1966.03.07 발효: 1969.01.04	미가입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채택: 1966.12.16 발효: 1976.01.03	가입: 1981.09.14 발효: 1981.12.1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채택: 1966.12.16 발효: 1976.03.23	가입: 1981.09.14 발효: 1981.12.14

80) R. Jennings & A. Watt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Vol. I (1992), pp. 1003~1004.

81) 자세한 내용은 김찬규·이규창, 『북한국제법연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pp. 80~83 참조.

조 약 명	채택 및 발효연도	북한 가입일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부적용에 관한 협약	채택: 1968.11.26 발효: 1970.11.11	가입: 1984.11.08 발효: 1985.02.06
여성차별철폐협약	채택: 1979.12.18 발효: 1981.09.03	가입: 2001.02.27 발효: 2001.03.29
고문방지협약	채택: 1984.12.10 발효: 1987.06.26	미가입
아동권리 협약	채택: 1989.11.20 발효: 1990.09.02	비준: 1990.09.21 발효: 1990.10.21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채택: 1998.07.17 발효: 2002.07.01	미가입

북한 당국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하고 있는 행위들은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및 세계인권선언에 반한다.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권규약은 노예상태에 놓여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그러나 정치범수용소 내의 수용자들은 강제노동을 위한 '도구' 또는 '일하는 개미'로 사용되고 있다. 수감자들은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바로 5시에 출근한다. 일하러 가면 6시 정도 된다. 정치범수용소는 특별히 요일별 차이가 없고 토요일, 일요일과 같은 휴일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매월 초 한 달에 한 번씩 쉬며,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날과 설날에는 쉰다.[82] 강제노동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북창 18호 관리소의 경우 탄광 내에서의 각종 사고로 사람이 죽는 경우 다반사였다고 한다. 김혜숙의 남동생도 탄광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83]

82) 신동혁, 『세상밖으로 나오다』, p. 45.

둘째,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 생명권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 자유권규약 제6조 제1항, 유럽인권협약 제2조 제1항, 미주인권협약 제4조 제1항, 아프리카인권헌장 제4조,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제2조 제1항,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선언 제1조,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9조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과 선언에 빠짐없이 규정되어 있다. 정치범수용소 내에서의 공개처형이나 즉결처형은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자행되는 행위로 수용자들의 생명권에 반한다.

셋째, 정치범수용소 수용자들은 가족결합권을 침해받고 있다. 가정은 일차적으로 남녀의 혼인으로 구성된다. 국제인권조약들은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84] 또한 가정은 부부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의해 확대되는데 아동권리협약은 제9조에서 아동이 의사에 반하여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가족결합권(right to family un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남녀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살 권리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개념이다.[85] 가족결합권은 북한 헌법에 의해서도 보장되고 있다. 북한 헌법은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8조). 그러나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완전통제구역에서는 부모자식 사이일지라도 함께 살 수 없다. 혁명화구역에서는 '표창결혼'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결혼이 인정되고 출산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북한 정치

83)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p. 42~44.

84) 자유권규약 제23조 제2항,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d)(iv), 유럽인권협약 제12조, 미주인권협약 제17조 제2항.

85) J. Money, "Human Rights Norms and Immigration Control," *3 UCL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Foreign Affairs* (Fall 1998/Winter 1999), p. 501.

범수용소에서 결혼과 출산은 금지된다. 부부관계를 못하게 하기 위해 밤과 낮에 서로 번갈아가며 일을 시키고 있다.[86]

넷째, 국제인권조약은 가족권 보호의 일환으로 여성의 모성보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권규약은 임산부에게는 분만 전후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일반 사회에서 임신한 여성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될 경우 출산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출산하지 못하게 강제 낙태시키는 경우도 있다. 북한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의 자식이라는 이유에서다.

다섯째,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존엄성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제1조).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한 생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 건강과 식량이다. 사회권규약은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적당한 식량과 의복, 주택을 포함하여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 모든 사람이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그러나 정치범수용소에서 건강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수용자들이 정치범수용소의 열악한 환경에서 영양실조와 심한 육체노동으로 폐렴, 결핵 및 펠라그라병(영양실조) 등의 질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으나 모두 예외 없이 작업장에 동원되고 있다. 작업반장이 더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수용자들은 중환자가 수감되는 요양소로 보내지는데, 이들은 치료해 줄 의사나 약이 없기 때문에 격리 수용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87] 식량문제 또한 심각하다. 탄광과 농장의 1일 배급량은 원래 1인당 옥수수 쌀 900g인데 1990년대 중반 이후

86) NKHR 2011-000134.
87)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2』, p. 137.

200g은 절약미라고 해서 떼어놓고 700g만 주었다. 부식으로는 염장 배추 3포기와 소금을 조금씩 받았다. 노동 강도는 세고 밥은 많지 않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파서 힘들다고 한다.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일은 쥐를 잡아서 구워먹는 것인데, 농촌지원을 나가면 쥐를 많이 잡을 수 있어서 일주일 내내 쥐를 잡아먹은 적도 있다고 한다. 소학교를 다니는 경우 1일 학생 배급량은 300g, 중학교 1~4학년은 1일 400g, 5~6학년은 1일 500g을 받는다.[88]

여섯째,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며, 형사상의 죄의 결정을 위해 법률에 의해 설치된 재판소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자유권규약 제14조). 그러나 북한은 재판 절차 없이 북한 주민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고 있다.

한편, 1998년 7월 17일에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이하 로마규정)이 채택되었다. 로마규정은 2002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로마규정은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침략범죄를 관할대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범죄 가운데 정치범수용소 내의 인권유린행위와 관련이 깊은 범죄가 인도에 반한 죄(또는 반인도범죄라고도 함)이다. 로마규정은 살해, 절멸, 노예화, 고문 등의 행위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절멸(extermination)이란 "주민의 일부를 말살하기 위하여 계산된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박탈과 같은 생활조건에 대한 고의적 타격"을 말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개처형과 즉결처형은 살해에 해당하며, 식량의 제한 및 치료 거부는 절멸에 해당한다. 강제노동은 노예화에 해당한다. 로마규정은 또한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

88) 신동혁, 『세상밖으로 나오다』, pp. 46~48.

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도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 임신여성에 대한 강제낙태가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종합하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자행되는 각종 인권유린행위는 로마규정이 정하고 있는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될 수 있다.[89]

2. 국제사회의 우려와 대응

가.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

국제사회는 유엔 총회, 유엔 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2003년, 2004년, 2005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였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 결의들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존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유엔 총회도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여 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6년 유엔 총회 산하의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신설로 해체되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200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북한 내의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엔에서의 북한인권결의 찬성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는 금년에 처음으로 무투표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였다. 이는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인권 찬성표 증가추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89)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9), p. 277.

있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대해 충분한 합의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90]

〈표-10〉 유엔의 북한인권결의 일지

채택 기구	문서번호	채택일	찬반	한국
인권 위원회	E/CN.4/RES/2003/10	2003.04.16	찬성:28 반대:10 기권:14	회의불참
	E/CN.4/RES/2004/13	2004.04.15	찬성:29 반대:8 기권:16	기권
	E/CN.4/RES/2005/11	2005.04.14	찬성:13 반대:9 기권:14	기권
총 회	A/RES/60/173	2005.12.16	찬성:88 반대:21 기권:60	기권
	A/RES/61/174	2006.12.19	찬성:99 반대:21 기권:56	찬성
	A/RES/62/167	2007.12.18	찬성:101 반대:22 기권:59	기권
	A/RES/63/190	2008.12.18	찬성:94 반대:22 기권:63	공동제안
	A/RES/64/175	2009.12.18	찬성:99 반대:20 기권:63	공동제안
	A/RES/65/225	2010.12.21	찬성:106 반대:20 기권:57	공동제안
	A/RES/66/174	2011.12.19	찬성:123 반대:16 기권:51	공동제안
	A/RES/67/181	2012.12.20	무투표 통과	공동제안
인권 이사회	A/HRC/RES/7/15	2008.03.27	찬성:22 반대:7 기권:18	찬성
	A/HRC/RES/10/16	2009.03.26	찬성:26 반대:6 기권:15	공동제안
	A/HRC/RES/13/14	2010.03.25	찬성:28 반대:5 기권:13	공동제안
	A/HRC/RES/16/8	2011.03.24	찬성:30 반대:3 기권:11	공동제안
	A/HRC/RES/19/13	2012.03.22	무투표 통과	공동제안

90) 이금순·한동호,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통일정세분석 2012-05 (서울: 통일연구원, 2012.6), pp. 2~3.

유엔은 또한 특정국가의 인권상황 보고를 위해 특별보고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유엔은 북한인권 상황을 위해 2005년 태국 국적의 비팃 문타본(Vitit Mnutarbhorn)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하였다. 문타본 특별보고관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는데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함으로써 비판받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2010년에는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011년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임 문타본 특별보고관에 비해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문타본 특별보고관이 정치범수용소의 존재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에 비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에 6곳의 정치범수용소가 있으며, 최대 200,000만 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는 북한에 대해서 독립적인 국제기구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가서 그곳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011년 10월 1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6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4월 6일 미국 상하원 정보특위 공화당 의원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참혹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으므로 국제인권단체의 방문이 필요하다”며 정치범수용소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보고서 발간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인권유린 현황에 대한 홍보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에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미국 상원은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에 대한 DB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 상원 법사위원장인 패트릭 레이히 의원이 2012년 5월말 세출위원회에 제출한 '국무부 대외운영 및 관련 사업 예산 법안'에서 '민주주의기금'(Democracy Fund)을 활용하여 북한 내 감옥과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DB구축을 추진하고 있다.[91]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실태는 각국의 연례 인권보고서와 북한인권 시민단체(NGO)들의 보고서에 반영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각국의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2010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암울하다"(grim)고 평가하면서 감옥(교화소)이나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혹독하고 체계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됐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북한인권위원회(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는 2012년 4월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 Hidden Gulag(숨겨진 수용소) 제2판을 발간하였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국제앰네스티(International Amnesty)는 대표적인 북한인권NGO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11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문제국가로 지목하면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 및 공개처형, 중국 체류 탈북자 등의 인권실태를 공개하였다. 2012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도 북한 정권은 조직적으로 주민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고질적으로 일

91) 통일연구원,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 4.

어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집단처벌이란 부당한 이유로 갇혀있다고 비판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2011년 5월 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요덕 15호 관리소에서 수용생활을 했던 사람과 전직 교도관의 증언을 인용하여 수용자들이 노예 수준의 강제노동과 고문 등 갖가지 인권유린을 당한다고 지적하였다.

다. 반인도범죄 종식을 위한 활동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의 인권유린을 비롯한 북한 당국의 반인도범죄 종식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반인도범죄 중단 및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촉구하는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와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를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The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North Korean Development: ICNK)는 2012년 1월 8일과 9일 영국과 프랑스, 태국 등에 있는 북한 대사관과 대표부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전달하면서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모든 북한 주민들의 석방 등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는 2011년 9월 일본 도쿄에서 미국,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40개 인권기구와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출범하였다.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 2012년 4월 15일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초청으로 프랑스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였다.

국제사회는 정치범수용소의 반인도범죄 중단 및 해체 촉구에서 나아가 북한 최고통치자와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사위원회 설립 촉구와 형사고발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는 2011년 9월 발족하면서 각국 정부가 공동으로 유엔 산하에 북한의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현장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2012년 4월 3일에는 프레스센터에서 유엔이 북한 정치범수용소 조사에 착수하도록 촉구하는 국제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12년 4월 10일 북한인권위원회와 유대인 인권단체(JBI)가 워싱턴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서 개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 국제회의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포괄적 검토 방안의 하나로 유엔 조사위원회 등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조사가 필요한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92] 유엔 인권이사회는 개별국가 및 특정주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기 위해 특별절차를 두고 있는데 현재 33개 주제와 8개 국가 위임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대량학살, 반인도범죄 등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유엔 차원에서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임명하여 구체적인 현황 및 인권침해 정보를 수집하고 권고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조사위원회 사례로는 2011년 2월 리비아에 대한 국제조사위원회 구성, 2011년 3월 시리아 지역 내에서 발생한 국제인권법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2006년 7월 2차 레바논 분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자행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등이 있다.[93]

---

92) 통일연구원,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p. 11.
93) 이금순·한동호,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pp. 16~24.

2009년 7월 24일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50여 개 단체들이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같은 해 12월 10일 반인도범죄피해자 150명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유엔 사무총장,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발송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예비조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는 2010년 11월 5일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의 북한예비조사 촉구에 대해 관할권이 없음을 통보하였다. 북한은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다. 그러나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① 범죄가 발생한 영토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거나 ② 범죄혐의자의 국적국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을 수락하는 경우 또는 ③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 소추관에게 회부하는 경우에는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향후 새로운 사실들이나 증거를 통해 북한 범죄혐의자들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내에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에 의해서 재검토 될 수 있음을 밝혔다.[94] 한편, 북한정의연대, 북한개선모임,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북한 반인륜범죄 종식 국제활동가연대'는 2012년 4월 13일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 혐의로 스페인 국가법원에 고발하였다.

94) 이금순·한동호,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p. 15.

Ⅵ. 결론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인권실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다 지속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국제사회가 유엔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반인도적 범죄'의 종식을 촉구한다는 점에서도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의 변화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치범수용소 내 수감규모에 대한 파악이 추정기관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탈북자 증언 및 위성사진의 정밀분석을 통한 수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를 감안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폐쇄·이전된 것으로 파악된 회령 22호와 북창 18호의 경우에도 위성사진 등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정보수집 및 객관적 분석을 위해서 연구기관과 정부부처 간의 협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철환. 『수용소의 노래(상)』. 서울: 시대정신, 2003.

_____. 『수용소의 노래(하)』. 서울: 시대정신, 2003.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0.

김찬규·이규창. 『북한국제법연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김한택. 『현대국제법: 이론과 사례연구』. 서울: 지인북스, 2007.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서울: 시대정신, 2011.

법무부. 『북한법연구(Ⅶ)-신형법』. 서울: 법무부, 1990.

신동혁. 『세상 밖으로 나오다』.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안명철. 『완전통제구역』.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윤여상. 『북한 인권 문헌분석』.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

_____ 외 3명. 『북한 구금시설 운영체계와 인권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0.

_____ 외 2명.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운영체계와 인권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이금순·한동호.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2.

이만희. 『범죄인 인도와 국제법』.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5.

최수아. 『북한 수용소의 기억』. 서울: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 2012.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서울: 통일연구원, 2011.

_____. 『북한인권백서 2012』. 서울: 통일연구원, 2012.

_____.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12.

통일연구원.『북한인권정책연구: 북한인권 이행의 새로운 지평』. 서울: 통일연구원, 2012.

허만호.『북한의 개혁 개방과 인권』. 서울: 명인문화사, 2008.

Hawk, David. *The Hidden Gulag(2nd Edition).*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Jennings, Robert and A. Watt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9th Edition). Oxford University, 1992.

Money, Jeannette. "Human Rights Norms and Immigration Control." *3 UCL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Foreign Affairs.* Fall 1998/Winter 1999.

Schwekendiek, Daniel. *The Data Atlas of North Korea.*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부록

1. 통일연구원 북한인권DB(NKHR DB) 정치범수용소 관련 증언

가. 관리소별

1) 14호 개천 관리소

수감자 이름	NKHR No.	수감 시기 (연도)	관련 내용	비고
오혜영	2011-000068	2007	- 농업책 반출 및 사회일탈(인신매매)로 정치범수용소 감. 면회는 허용되지 않음.	

2) 15호 요덕 관리소

수감자 이름	NKHR No.	수감 시기 (연도)	관련 내용	비고
김향숙	2010-000068	2008	- 한국인과 돈거래 및 이산가족 찾기 혐의	
○○○ 외 3명	2011-000090	1975	- ○○○의 아버지는 도시경영사업소에서 일했었음. 아버지께서 말을 잘못 해서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됨. 1975년도 처음 구금될 때, 함경남도 요덕군 용평리에 2년 간 있다가, 요덕군 구읍리에 귀국자들만 따로 집을 지어서 보냄. 거기서 1년 간 있었음 (증언자 포함 가족 귀국자 출신임). - 농사지어서 배급 받음(크게 배고프지는 않았음). - 규제가 크게 심하지는 않았음. - 부모님 농사일하고, 본인은 그 안에서 학교 다님. - 3년 간 구금된 뒤, 1978년도에 함경남도 부덕군으로 보내져서 부덕군에 거주하게 됨. - 요덕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서 나올 때, 그 곳에 있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손도장을 찍었다고 함.	본인 직접 수감

수감자 이름	NKHR No.	수감 시기 (연도)	관련 내용	비고
최윤식	2011-000110	1995	- 최윤식은 러시아 유학을 다녀왔음. 이후 '노란물'이 들었다는 이유로 관리소에 3년 정도 구금됨.	
류수봉	2011-000178	2004	- 증언자 ○○○의 외삼촌(어머니의 남동생) 류수봉은 2004년도에 '비판발언'으로 인해서 함경남도 요덕 제15호 관리소에 3년형을 받고 구금됨. 그러나 관리소 내에서 사망함(2008년경에 사망통지서가 전달되었다고 증언). - 관리소는 면회가 되지 않는다고 증언함.	
고철배 및 그의 가족	2011-000214	-	- 증언자 ○○○는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고철배에게서 수용소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듣문. 그러나 고철배는 수용소에서의 생활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야기하면서 짐승보다 못한 생활이었다고 말했다고 함. - 고철배의 아버지는 수용소 내에서 사망했으나 가족들은 해명하여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었음. - 수용자 중 2명이 도주 시도하다 붙잡혀 1명은 교수형 당하고, 다른 1명은 동료 수감자들로 하여금 돌을 던지게 했다고 함.	
최광운	2012-000015	2009	- 증언자 ○○○와 동거살이를 했던 최광운은 한국기도(도강)로 함남 요덕 제15호 관리소에 구금되었다고 함. - 혁명화구역에 구금되어있으며, 올해(2012) '대사'로 풀려날 것으로 예상함(가족 비동반 구금).	

3) 16호 화성 관리소

수감자 이름	NKHR No.	수감 시기 (연도)	관련 내용	비고
김태봉	2010-000055	1997	- 증언자 ○○○는 '초급단체 비서'였는데, 담당보위지도원이 김태봉을 관리소에 인계하라고 지시해서 인계하러 관리소 가봄. 관리소 안은 초소를 10개 정도 거쳐야 들어감.	

4) 18호 북창 관리소

수감자 이름	NKHR No.	수감 시기 (연도)	관련 내용	비고
박형찬	2011-000001	-	- 평남 북창 제18호 관리소는 완전한 정치범 수용소는 아님(보안서 관리소).	
다○○	2012-000066	2002	- 증언자 ○○○는 2002년 함북 사리원에 사는 보안서장 다○○(남, 당시 58세)이 국가사업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등 당로선 탈선행위로 그의 가족(아들, 딸, 며느리, 손자 등 3대)이 평남 북창 제18호 관리소에 수용되었다고 득문	

5) 22호 회령 관리소

수감자 이름	NKHR No.	수감 시기 (연도)	관련 내용	비고
김영실 외 4명	2011-000134	2005	- 구금자 김영실은 국군포로 가족 4명(함북 경성군 경성군읍 110반 거주)을 탈북 중개하다가 발각됨. - 증언자 ○○○는 2009년에 함북 회령 22호 관리소 보안원 딸에게 직접 이하 사실들을 득문 ① 아침 운동 시 '조상타도'(구금자 조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관리소에 오게 됐다는 의미)를 외치며 뜀. ② 관리소 아이들 10시부터 노동 시키며, 강도가 매우 셈. ③ 엄마가 아이 일을 도와주면 벌을 세움. - 각자 일 각자가 완수해야 함. - 아이 일을 도와 줄 수 없음. ④ 부부관계 못하게 하기 위해 낮/밤 번갈아 가며 일을 시킴. ⑤ 관리소에 '수로'가 있었음. - 이는 유사시 구금자 사살 때 총알이 아깝다는 이유로 수로에 익사시키기 위함. ⑥ 식사: 옥수수밥 3끼 지급 - 보안원의 지적을 받거나 아이 일을 도와주는 경우 발각 이틀 치 식사 제공하지 않음. ⑦ 지하 감옥 - 개인 과업 미완성 및 말반동자는 독방(1m*1m) 20~30일 구금됨. - 일반 식사량 절반 지급	

수감자 이름	NKHR No.	수감 시기 (연도)	관련 내용	비고
김광혁	2012-000058	1999	- 증언자 ○○○의 동료 김광혁(1973년생, 강안탄광노동자)이 골동품과 마약거래 혐의로 함북 회령 제22호 관리소 15일 동안 구금됨. 이후 재판을 거쳐 3년 교화형을 받고, 다시 예심과정에서 병보석으로 석방되었지만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고문과 구타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	

6) 25호 청진 관리소

수감자 이름	NKHR No.	수감 시기 (연도)	관련 내용	비고
최강희 외 4명	2010-000110	1989	- 6명이 함께 한국녹화물을 시청하다가 4명은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고, 나머지 2명은 중국으로 도망쳤다고 증언함. -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될 때, 가족이 모두 구금되거나, 혹은 '같이 가겠느냐,' '이혼하겠느냐' 한다고 증언함.	
남춘봉	2011-000008	1997	- 중국에 함께 도강한 김선영(곡산공장 노동자) 및 다른 사람들과 대화 중, 증언자 ○○○의 남편(남춘봉)이 "김정일, 통일 아니 된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 김선영이 북한으로 귀환 후 보위부에 신고(고자질) 함. - 도보위부 재판 후, 청진 수성교화소 구금. 도보위부 재판은 가족 참관 허용되지 않음(시안전부 재판도 가족 참관 허용 안 됨). 청진 수성교화소는 수감자 면회도 안 됨. - 증언자가 교화소 갔다가 나온 뒤, 2005년 9월경 남편(남춘봉)이 단천 대흥리에 청진 수성교화소 분소가 있는데 그곳에 이감되어 축산일을 하고 있다고 청진 수성교화소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이야기 해주었던 것을 들음.	
장영식	2012-000037	1996	- 증언자 ○○○의 아버지 장영식은 비판발언 및 50만원짜리 북한화폐 위조 혐의로 청진 25호 관리소에 수감됨.	

7) 기타

수감자 이름	NKHR No.	수감 시기 (연도)	관련 내용	비고
김경진	2010-000013	2000	-	함북 종성 관리소
서관희	2010-000036	-	-	함남 단천시 검덕광산 대흥구

나. 수감사유

NKHR No.	수감자 이름	관리소	연도	수감 사유
2010-000010	-	요덕 15호 관리소	2006	- 한국 CD시청
2010-000034	김재석 외 5명	-	2008	- 김재석의 아버지가 8월 종파 사건과 관련. 연합당 조직부지도원이 김재석에게 어려운 일을 시켜서 불평을 하도록 조장시키라고 지시함. 불평 한마디라도 하면 잡아가겠다고 함. 그러더니 잡혀갔음. 김재석의 형(김재춘)의 가족도 모두 같이 감.
2010-000035	조은옥	-	1996	- 증언자 언니 조은옥은 중국인 여행자 숙박업을 하였음. 중국인이 (포교를 목적으로) 가지고 온 성경과 찬송가로 기도와 찬양하게 됨. 이 중국인이 북한에서 여러 군데 포교활동하다 발각됨. 계속되는 신문에 중국인이 결국 언니 얘기를 하게 되어 잡혔음. 특히, 1996년 당시 종교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았다고 함.
2010-000039	-	개천 14호 관리소	1998	- 구금 피해자가 자재관리 일을 하다가, 동료들과의 실갱이 사이에서 '김일성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게 됨. 동료들의 모함으로 정치적 불손으로 구금됨 (김일성 언급).
2010-000056	안철	-	-	- TV에 김정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너 처럼 하면 나도 하겠다" 발언
2010-000068	김향숙	요덕 15호 관리소	2008	- 한국인과 돈거래 및 이산가족 찾기 혐의

NKHR No.	수감자 이름	관리소	연도	수감 사유
2010-000110	최강회 외 4명	청진 25호 관리소	1989	- 6명이 함께 한국녹화물을 시청하다가 4명은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고, 나머지 2명은 중국으로 도망 -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될 때, 가족이 모두 구금되거나, 혹은 '같이 가겠느냐, 이혼하겠느냐' 물어본다고 증언함.
2011-000008	남춘봉	청진 25호 관리소	1997	- 중국에 함께 도강한 김선영(곡산공장 노동자) 및 다른 사람들과 대화 중, 증언자의 남편(남춘봉)이 "김정일, 통일 아니 된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 김선영이 북한으로 귀환 후 보위부에 신고(고자질) 함. 도보위부 재판 후, 청진 수성교화소 구금. - 청진 수성교화소는 수감자 면회도 허용되지 않음.
2011-000035	-	-	-	- 남한출신인 박형춘(여), 김광진(남)의 형제 3명이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 구금된 것을 '황씨 보위지도원'에게 1990년도에 득문했다고 증언함. - '황씨 보위지도원'이 증언자에게 박형춘과 김광진을 감시하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함. - 증언자의 부모가 귀국자(1962년 귀국) 출신이라서 증언자에게 감시 시키는 것을 보위지도원이 이용한 것이라고 증언함.
2011-000046	-	-	-	- 함북 온성군 동포구에 정치범수용소 같은 것이 있었음. - 철조망에 전기 철조망으로 둘러쳐 있으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옴. - 주로 월남 출신 가족이 있는 사람이나 말을 잘 못한 경우 구금됨.
2011-000068	오혜영	개천 14호 관리소	2007	- 농업책 반출과 사회일탈(인신매매)로 정치범수용소 감.
2011-000090	○○○ 외 3명	요덕 15호 관리소	1975	- 증언자의 아버지는 도시경영사업소에서 일했었음. 아버지께서 말을 잘못 해서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됨.
2011-000097	-	-	-	- 증언자 지인의 친구가 정치범수용소(관리소) 직원이었다고 들음. - 1970~1980년대에는 말 반동으로도 관리소에 많이 구금되었다고 득문함(1990년대에 요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김정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주로 구금되었음).

NKHR No.	수감자 이름	관리소	연도	수감 사유
2011-000101	-	-	2006	- 증언자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보내 준 돈을 중국에서 받았는데 액수가 커서 안기부 돈이라고 누명을 쓰고서 증언자의 아버지는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 구금됨. (2006년) 정확히 어느 관리소인지는 잘 모름.
2011-000110	최윤식	요덕 15호 관리소	1995	- 증언자 친구 최윤식은 러시아 유학을 다녀왔음. 이후 '노란물'이 들었다는 이유로 관리소 3년 정도 구금됨.
2011-000134	김영실 외 4명	회령 22호 관리소	2005	- 국군포로 가족 4명(함북 경성군 경성군읍 110반 거주) 탈북 중개 발각
2011-000178	류수봉	요덕 15호 관리소	2004	- '비판발언'으로 '함경남도 요덕 제15호 관리소'에 3년형을 받고 구금됨.
2011-000196	-	-	2010	- 강원도 천내군에 있는 '연유(연료)창고'(김일성, 김정일이 비축 했던 비밀 창고)의 기름을 연유공급소 소장과 연유공급소 부기, 비서가 절도하고, 사용 및 판매를 하여 2010년 2월경, 그 3명의 가족까지 정치범수용소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함. - 그 집에 사위가 있다면 딸과 이혼시키고, 며느리가 있다면 아들과 이혼 시켜서 사위, 며느리는 정치범수용소에 가지 않았다고 함.
2011-000207	-	-	2008	- 증언자의 고등중학교 담임선생님인 장영희의 남편이 한국 안기부에 관련된 스파이 활동을 하여 장영희의 가족이 2008년경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었다는 것을 동창에게 득문함. - 장영희의 손녀도 함께 구금되었고, 사위는 함께 정치범수용소에 가겠느냐는 의사를 물어서 가지 않겠다고 하여 사위는 정치범수용소에 가지 않았다고 증언함.
2011-000213	-	명간(화성) 16호 관리소	2000	- 구금자의 아버지 '○○당 사건'으로 가족 모두 정치범수용소에 수용. 모두 흩어짐.
2011-000230	-	-	2006	- 2006년 3월경,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꽃제비 및 사람들을 사진 찍다가 발각되어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었다고 증언함(어느 정치범수용소인지는 모름).

NKHR No.	수감자 이름	관리소	연도	수감 사유
2011-000230	-	-	2009	- 2009년 겨울, 밀수(한국과 거래)를 하다가 발각되어 15년 형량을 받고서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었다고 증언함.
2012-000003	최광진	-	1997	- 증언자 둘째오빠는 남한 안기부 돈 받았다는 이유로 구금되었음.
2012-000015	최광운	요덕 15호 관리소	2009	- 한국기도(도강)로 함남 요덕 제15호 관리소(혁명화구역) 구금되었음.
2012-000020	-	회령 22호 관리소	-	- 이미 한국에 온 사람(여자, 함경북도 회령시 동명동 거주했었음)이 아이를 데리러 북한에 다시 들어갔다가 발각됨. - 2009년 12월경, 가족이 모두 '22호 관리소'에 구금되었음.
2012-000066	김○○	북창 18호 관리소	2002	- 2002년 함북 사리원에 사는 보안서장 김○○(남, 당시 58세)이 국가사업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등 당로선 탈선행위로 그의 가족(아들, 딸, 며느리, 손자 등 3대)이 평남 북창 제18호 관리소에 수용
2012-000096	-	청진 25호 관리소	1997	- 발언부주의로 3명 잡혀 갔는데 1명 살아나옴.
2012-000123	엄용현	요덕 15호 관리소	2003	- 북한선교하다 혁명화구역 3년형 받음.
2012-000126	-	청진 25호 관리소	-	- 남한출신(의용군) 포로교환, 임무 미수행으로 관리소 수감 - 유괴형식으로 데려갔으며, 이후 절차 알지 못함(미통보). - '(관리소 내) 종신(구역) 간 모양'이라고 추측할 뿐임. - 아내에게 이혼여부 물어봄.

다. 시설

NKHR No.	수감자 이름	관리소	연도	내용
2010-000047	-	-	-	- 온성군 창평 정치범수용소 철수 (22호 일부 존재) → 함남 쪽으로 이동
2010-000071	-	회령 22호 관리소	-	- 22호 관리소는 3개 군에 걸쳐 있으며, 3중 철조망 쳐져 있음.

NKHR No.	수감자 이름	관리소	연도	내용
2011-000008	남춘봉	청진 25호 관리소	1997	- 증언자 ○○○는 '함남 요덕 제15호 관리소,' '함북 회령 제22호 관리소'를 들어 봄. - '함북 화성 제16호 관리소'에서 외가 6촌(지영춘)이 소장 차 운전수를 함. - '함북 회령 제22호 관리소'는 동포에 있던 게 없어지고, 회령 중봉으로 옮겨짐.
2011-000035	-	-	-	- 청진 수성 관리소와 청진 수성교화소가 따로 있다고 증언함. - 청진 수성 관리소는 자전거를 생산한다고 증언함.
2011-000037	박건춘 외 2명	-	2006	- 회령시 회령군 사을리를 관리소로 만들었다고 증언함. - 관리소 관리하는 보위부원 가족들을 직장에서 많이 만남. 듣기로는 관리소 안에 한 가족을 같이 있지 못하게 한다고 함.
2011-000160	-	북창 18호 관리소	1999	- 1996년 북창 18호 관리소 통제 구역을 해방함.
2011-000165	-	회령 22호 관리소	-	- 화포 탄광에서 도보로 15~30분 거리에 위치 - 출입위해 도, 시군 결재 후 중앙당 비준을 받아야 함. - 수성교화소를 거쳐서 22호 관리소에 들어감. - 울타리에 3,300v 고압이 흘러서 도주할 수 없음. - 화장터가 보였으며(한 달에 2번 화장함), 남녀 따로 생활. 결혼이라는 게 없음. - 아이들도 소학교 4년만 다니고 노동함.
2011-000193	-	북창 18호 관리소	-	- 영양 및 위생: 식사 매우 열악함(하루 한 끼 먹기 어려웠음). - 생활 규제: 가족 입소→ 따로 구금→ 생활 잘하면 한 달에 한번 같이 식사하도록 허락 - 노동: 탄 캐기 - 평남 북창 제18호 관리소에 있다가 해제되어 풀려남.
2012-000160	-	명간(화성) 16호 관리소	-	- '화성'에서 '명간'으로 명칭변경: 2008년 김정일이 현지지도 가는 중 변경함.
2012-000161	-	회령 22호 관리소	-	- 함북 회령 제22호 관리소를 2011년 다른 곳으로 옮김(함남).

NKHR No.	수감자 이름	관리소	연도	내용
2012-000222	-	-	-	* 회령 22호 관리소 폐쇄 ○ 작년 2011년 겨울부터 22호 관리소 내 시설물 등 옮겨내기 시작함. - 2012년 올 봄 본격적으로 이동행렬 있었음. - 22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관리성원인 것으로 보이며, 22호 내에서 석탄 및 고기 등을 사회로 내보냄. ○ 22호 관리소를 사회(경영위원회)에서 일부 인계받음. - 경영위원회에서 인계받아 농장화 - 관리소 지역에 들어가서 거주할 사람들 올(2012년) 봄에 모집함. ○ 과거('96~'97년경)에도 일부를 사회에 인계하여 담배농장화한 적 있음. - 당시 4.25 담배농장으로 만들어 제대군인들 거주하게 함. - 군대 담배 생산함.
2012-000236	-	회령 22호 관리소	-	○ 함북 회령 22호 관리소 - 2012년 6월 22호 관리소 폐쇄 =〉 지역별 농장 작업반 - 폐쇄 이유: 외부에 너무 많이 알려짐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
2012-000258	-	회령 22호 관리소	-	○ 증언자에 의하면 함북 회령 22호 관리소는 6월 말 철수가 완료됐다고 함. - 사람들의 경우 밤에 호송하여 다른 데로 이송하여 갔으며, 기자재는 낮에 차에 실어서 기차로 실어 나르는 것을 목격 - 현재는 철조망까지 모두 철거된 상태임. - 7월 1일부터 '선군마을' 꾸리기 작업이 시작됐다고 함. - 핵심적인 사람들(성분 혹은 범죄관련 없이 깨끗한 사람들)을 각 리마다, 탄광, 공장, 기업소 등에 배치 시켰다고 함. - 증언자는 (2012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간 김매기 작업을 하러 행영리에 들어감.

NKHR No.	수감자 이름	관리소	연도	내용
2012-000258	-	회령 22호 관리소	-	- 22호 관리소 죄수들이 파종만 해놓고 김매기를 하지 못해서 회령시의 각 공장, 기업소 사람들이 들어가서 김매기를 했다고 함. - 22호 관리소로 새로 배치된 주민들은 기존에 죄수들이 살던 집을 쓰고, 2013년부터 함북 9군단이 들어와서 집을 지어 주기로 했다고 함. ○ 22호 관리소가 개방되면서 종성구가 종성군으로 개편됨. - 2개 리가 종성군에 편입되고, 3개 리가 회령시로 편입되었다고 함. ○ 22호 관리소는 총 5개 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세 개 리가 행영, 중봉, 사을리임. - 중봉리는 탄광 지역이라고 함.
2012-000284	-	회령 22호 관리소	-	○ 증언자에 의하면 함북 회령 제22호 관리소는 2012년 7월부터 일반 주민들이 기업소마다 몇 명씩 차출되어 기존의 관리소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고 함. - 시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관리소 안으로 안 들어가고 다시 터를 잡아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관리소 땅에 들어가서 산다고 함. ○ 22호 관리소는 사을리, 행영리를 포함해 5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언자는 사을리와 행영리밖에 모르겠다고 증언 ○ 소문에 의하면 22호 관리소는 자리를 옮겨가면서 인원을 축소했는데 할아버지 세대에 죄를 지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내보내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화성 쪽으로 옮겨갔다고 득문 ○ 나이든 군관들은 제대를 시켰다고 함.

2. 정치범수용소 인권침해실태 증언[95]

가. 생명권

- 거기(혁명화구역) 있다가 종신으로 간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 반동을 일으켜서 그런 거다. 살아 나오질 못한다. 혁명화구역은 보위지도원이 즉결처분 하지는 않는다. 달아나게 되면 즉결처분 한다. 종신구역에서 생활을 잘 해서 혁명화구역으로 온 경우는 없다. 죄명이 다르니까 생활 잘 한다고 오는 건 없다. 혁명화구역으로 오는 사람들은 혁명화를 시켜서 내놓아도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잘 한다고 (종신에서) 혁명화로 넘어올 수가 없다.

-15-A

- 교원들은 없고, 안전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총을 소지하고 있다. 반항하는 사람 못 봤다. 거기 들어가면 눈만 마주쳐도 매를 맞으니까. 엎어져서 발로 차면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울면 때리고.

-15-B

- 내가 있을 때 달아나다가 잡혀서 공개처형한 사례가 한 번 있었다. 종신구역에 내려가서 한 달간 조사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올려다가 쐈다. 도주하지 않고 반정부 음모를 꾸미면 총살 안 하고 종신구역으로 넘어간다. 어차피 거기도 막 잡아죽이면 일할 노력이 없어지니까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종신은 불응하게 되면 바로 쏴버린다고….

-15-A

-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총살을 한다. 간첩이라는 혐의로 죽기도 하고, 도둑질 한 경우에도…. (총살을 한다) 학생 때 싸움했을 때 심하게 다쳐서 살인미수가 됐는데 어린 나이니까 감옥은 아니고…. '소년 교양대 감옥'이 따로 있더라.

-15-B

- 이주민에 대해서는 그런 처벌이 들어간다. "탄 캐는 거, 너는 죽을 때까지 탄 캐라." 근데 탄 못 캐면 '당 정책에 대한 시비다' 이래가지고 이건 보위부에다가 넘긴다. 그 때는 불만자들을 매주 목요일마다 정치범교화소, 14호로 넘긴다. '풍차'라고 그런다. 그 때는 인간이 아니고, 도구로 취급한다.

-18-A

---

95) 가○○ 15-A/ 나○○ 15-B/ 다○○ 18-A/ 라○○ 18-B/ 마○○ 18-C/ 바○○ 22-A/ 사○○ 22-B. 증언자 인적사항은 <표-3>(p. 6) 참조.

- 한 달에 그저 보통 그저 30명 정도는 죽어나간다. 사고로 인해서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는 먹지 못해서 죽어나가는 거 많았고. 그저 앉아 죽고, 서서 죽고, 가다 죽고, 먹다 죽고, 일하다 죽는 다는 말이 이 다섯 가지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다.

-18-A

- 논김을 하루에 100평을 김맨다. 근데 다 100평을 맸는데 한 사람은 김 못 매고 아프니까 일 못 한다. 그럼 "나오라." "야, 몽둥이 가지고 나오라. 죽여라." 총을 안 쓴다. 몽둥이로 때려서 죽여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묻고 만다. 그러면 끝이다.

-18-A

- 문건을 작성해서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돼지 한 마리 때문에 사형 당하는 사람도 있다. 잡아먹어서…. 그것은 재판도 없이 지령에 따라서…. 안에 '교양소'라는 게 또 있다. 교양소는 일반사회 교화소와 같다. 노동도 시키고…. 총구 밑에서 자라면 자야 되고,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고, 매도 맞는다.

-18-C

- 22호로 들어갔던 사람은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 22호는 나오는 사람이 없다. 거기는 그냥 죽어야지 못 나온다. 죽어도 못 나오는 곳이다.

-22-B

- 감옥이 있다. 그 안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 같은 데 갖다가 이렇게 넣는 것도 있다. 그런데 별로 그 안에서 크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 같지는 않다. 정말 중범죄를 지어가지고 이래서…. 그냥 죄를 지으면 다 쏴 죽인다.

-22-B

- 죄수들이 죽은 건 어디다가 묻어버리는 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하니까.

-22-B

- 공개처형 안 했다. 그 안에서 뭐 공개처형할 게 있나. … 근데 15호라면 그럴 수 있다. 모아놓고 공개처형하고. 15호, 16호 이런 데는 사회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교양시키는 입장에서 공개처형을 한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구분이 된다.

-22-B

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감옥은 관리소 밑에 있다. 거기서 죄 지으면 다시 관리소 감옥에 들어가서 60일, 90일.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엉덩이가 다 썩어서 나오더라. 여름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바닥에 앉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다 썩어서 나온다.

-15-A

- 사냥을 여러 번 갔댔다. 나는 직업이 좀 그러니까 가서 곰이나 멧돼지를 총으로 쏴서 잡고 그랬다. 올라갔다가 종신에 있던 사람들 만난 적이 있는데, 콧노래 부르고 내려오더라. 옷은 우리 일반적으로 입는 것하고 똑같더라. 우리 딱 만나니까 달아나더라. 내가 물어봤는데, 규정이 우리 만났다고 노출되게 되면 1년씩 감방에 들어갔다가 뼈만 남아서 나온다고.

-15-A

다. 표현 및 의사의 자유

- 18호 이주민이라고 하면 발언권도 없고 밖에도 나갈 수 없고 그 편지거래도 할 수 없고 일절 딱….

-18-A

- 일단 관리소에 잡아넣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밖에 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뭘 상소하고 신소하고 이럴래도 뭐 밖에 하고 접촉이 돼야….

-18-A

- 말을 함부로 못한다 뿐이지…. 내가 똑똑하면 거기서 살아남는다. … 일반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거다. 말을 잘못하면 영원히 못나오는 곳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공포를 주는 거다. 공민증은 없다.

-22-A

라.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 재판 안 한다. 경제범들이나 재판하지, 보위부에서 취급하는 건 일체 재판 안 한다. 자기 영문도 모르고 잡혀가는 사람도 많은데…. 자기가 보지도, 모르는 친척이 잘못해서 잡혀가는 경우도 여러 가진데…. 재판이 없다.

-15-A

- 보위지도원이 말하는 것이, 매 사람당 자기가 잘못한 과오, 죄질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 사람의 죄명을 모른다고…. 김일성, 김정일 측근이 오는 것은 가계비밀, 국가비밀 누설하고 오는 것이 중대비밀이니까 그걸 기록하면 보위지도원들이 또 알게 되니까 기록을 안 하는 거다.

-15-A

- (어느 관리소에 갔는지는 가족에게도) 절대 그건 안 알려주니까.

-22-B

마. 가족권

- 부모형제도 다 갈라놓는다. 보위원이 말해줬다. 부모형제 다 갈라놓고 일을 잘하면 한 번씩 만날 수 있고…. 결혼은 아예 안 된다.

-15-A

- 옷은 들어올 때 가족세대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들어오고, 독신세대도 자기 입을 것 가지고 들어오니까…. 들어온 지 오래된 가족세대 같은 경우는 먹을 것을 가지고, 독신들이 여러 벌 가지고 들어오니까 교환한다. 1년에 한 벌 정도 옷을 준다.

-15-A

- (임신한 경우) 못 낳고, 처벌을 받게 된다. 남자는 감옥을 가게 되고, 여자는 밑에서 의사가 올라와서 수술을 한다. 북한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의 자식인데, 그걸 왜 키우나. 이미 낳아서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15-A

- 입은 옷을 보니까, 다 치마 저고리. 우리 때는 다 파마하고 신식이었거든? 파마하고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파마 못하니까 댕기머리 하고 풀고 다녔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반머리로 잘라야 하고…. 대다수의 처녀들은 댕기머리 해서 "내가 조선시대 왔나?" 생각이 들더라.

-15-B

- 독신자들은 집에서 못 산다. 그러면 독신자 합숙이 따로 있는데, 처녀, 총각들도 많고…. 결혼을 안 시키더라. 처녀, 총각 연애하다 걸려가지고 비판 받고…. 사람들 앞에 세워서 비판한다. 교화소 같은데 보내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

-15-B

- (결혼이) 원래 자유롭다 그러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하면 '저 분이 해지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하든지 그걸 알아보려고 안전원한테 찾아간다. 가서 "나 이분하고 결혼식해도 되겠습니까?" "너 알아서 해라. 너 그 결혼하면 끝이야." 종신이라는 거지. 그럼 내가 결혼하겠어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그러니까 끝이라는 건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종신적으로 이주민 생활을 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18-A

- 결혼은 자유다. 자유연애도 한다. 이주민과 해제민은 반대한다. 한 사람은 통제를 할 수 없으니까, 결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경위를 보고 이주민을 해제시키거나 아니면 해제했던 사람을 다시 뒤집던지 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18-C

- 결혼은 시키는데 자식은 못 낳게 한다. 종자를 말리는 거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니까 그런 말을 자주 하더라. 남편은 밤에 일하고 아주머니는 낮에 일하고…. 종자를 말리는 거다.

-22-A

- 그 안에서 결혼은 가족이 들어갔지만 절대 부부생활을 안 시킨다. (각방을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낮에 일을 나간다. 그럼 저녁에 들어온다. 그럼 남편이 들어오는 시간에 여자가 나간다. 서로 둘을 엇갈리게. 일을 엇갈리게 시킨다. 그럼 일을 정말 잘 한다, 둘 다. 그럼 표창…. 결혼이 아니고, 표창으로 두 부부를 하루저녁 같이 재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절대 그 안에서 애를 마음대로 못 낳는다. 둘이 서로 좋아할 수도 없다.

-22-B

- 애가 생기면 낳는다.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 계속 밖에서 (사람들을) 들여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애들이 가끔씩 나오고, 어느 정도 큰다. 결혼할 정도 되면 결혼을 시킨다. 그러면 또 아까처럼 이렇게. 절대 같이 계속 부부생활을 안 시킨다 그 안에서는.

-22-B

바. 건강권

- 병원 같은 것은 말로 병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무 것도 없고, 혁명화구역은 그나마 수술환자가 생기면 밑에다 연락을 해서 종신관리소에서 의사가 올라와서 간단한 수술은 해준다.
- 혁명화구역에 의사다운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내가 있을 때는 인민군 군인이 의사를 했다.

-15-A

- 병원은 관리성원 병원이 따로 있고, 이주민 병원이 따로 어디 있는데. 해지자들은 관리성원 병원에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이주민 병원에 갈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주민 병원에를 많이 간다. 왜? 거기 가면 특혜를 받으니까.

-18-A

- 병원이라고 거기 있다. 보피 병원. 득장에서 그 병원 하나다. 보피 병원. 이 안이 얼마나 큰 지… 한 개 군보다 조금 더 커. 그래서 병원이 보피 병원 하나이지만은 조그마한 진료소는 다 있다.

-18-B

- 안에 병원시설은 따로 없다. 우리 관리하는 선생이 가서 수술해 줄 것이다. (관리성원들이 쓰는) 한 병원에서 하는 걸 거다. 그런데 죽으면 아무데나 묻어버린다. 장은 해줄 수가 없다.

-22-A

사. 식량권

- 가족들은 옥수수, 옥수수 가루, 옥수수 국수를 배급받고, 개인들은 집단적으로 생활하니까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보름마다 식량을 받아다가 집단적으로….

-15-A

- 그 안에 겪은 기억이, 풀 뜯은 것 밖에 없다. 산에 가서 풀 뜯어서 보태서 먹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된다. 기본 풀로 산다.

-15-B

- 거기 사람들은 인권이 따로 없다. 말 그대로 일하는 개미들이다. 공민증을 박탈한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자기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끌려와서 고

생하고 있다. 사람들이 잘 먹는 것보다도, 정상적으로 먹고 입고하면 생활이 괜찮겠지? 그런 최소한의 것들이 보장이 안 된다. 강에 가면 개구리 잡아먹고, 산에 가면 뱀 잡아먹고, 짐승 잡아먹고…. 나도 개구리 잡아먹은 생각난다. 나는 "쥐 잡아 먹는다" 이런 소리가 무슨 소린가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영양이 약하니까 쥐를 잡아서 가죽 벗겨서 고아서 억지로 먹였던 게 생각난다. 내가 쥐고기도 못해도 한 푸대쯤 먹었을 것 같다.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15-B

- 일하다가 교대를 바꿔서 신교대 애들이 들어가서 또 일을 하겠지? 그러면 자리를 내줘야 되겠지? 그럼 이들은 다른 데 가서 어디 가서 긁어서라도 탄을 수집을 해서라도 계획을 해야 되겠지? 왜? 이 탄을 캐던 데 비하면 이건 10배 힘이 들겠지? 아무리 캐도 탄을 다 못 캤지. 못 하다보니까 그냥 다 피곤해서 쓰러지지. 그럼 점심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갔다가 저녁 못 먹었지. 아침 안 먹었지. 아침 안 먹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또 교대하고 그 자리에서 또 일을 해야 되지? 그런 강한 노동. 그 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일을 못 한다. 다 쓰러진다. 그럼 쓰러지기 전에 나오지. '직영과제'라 그러는데 그 계획을. 그 계획을 못 할 경우에는 영양제라고 있어요. 영양제. 이 밥을 안 준다. 밥도 안 주고 계획을, 과제를 수행 못 했으니까 지령 못 한 거만큼 배급에서 잘라낸다. 그러니까 세 번…. 3일 동안 연속 지령과제를 수행 못 하면 하루분 식량을 공제한다. 가족과 함께 전체. 이모저모 그 피해라는 게 막심하다. 그렇게 하면 다음에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2교대도 하면 영양제도 먹고, 배급도 주고.

-18-A

- 조금 백미로 900(g)준다. 내한테만 900(g)주지. 부양가족은 학생아이들이니까 400(g), 300(g), 200(g) 이렇게 나간다. 그건 변함이 없다.

-18-B

- 난 직접 채탄공 했으니까 1급 받지. 그 다음에 밑에서 탄만 받는 여자들은 주로 탄만 받는다. 광주리에다…. 그런 사람들은 2급 받는다. 그다음에 막장에다 번 것을 들여다 준다. 여느 시시한 것 차 수리한다는 사람은 3급으로 국만 준다. 2급은 우리(1급) 절반주고. 고기 내가 한 마리 줬다고 하면, 오리 한 마리 줬다고 하면 2급은 절반 준다. 3급은 없다. 국만 준다.

-18-B

- 배급은 하루도 일 안 나가면 자른다. 무단결근했다가는 무조건 자르고. 무단결근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픈데 진단서 안 떼 주거든요. 안 떼어주면 자기는 못 견디는데…. 일 안 나가지. 무단결근해요. 그러면 무조건 배급표 자른다.

-18-B

- 농장에서 채소나 과일 같은 것을 심으면 다 간부 거다. 우리들은 바라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배추 있잖아. 그 양배추 심어놓은 껍데기 뜯으러 다닌다. 그거라도 주워가지고 삶아가지고…. 그래도 내 기억에는 양배추 껍데기가 낫더라고….

-18-B

- 하루에 200g씩 준다. 밥 200g에…. 원래 '노르마'라는 게 있다. 돼지고기 얼마, 계란 얼마 있는데…. 그거는 끊어져서 다 없다. 밥 한 끼 200g는 준다. 국가에서 곡식 200g은 준다. 사무원들은 700g, 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800g, 900g. 국가의 양곡 기준은 변함이 없다. 탄광노동자도 서로 다르다. 경노동은 600g 까지 있다. 아이들 배급은 다 나온다. 중학생은 500g, 초등학생은 400g, 좀 어리면 300g, 보솜이가 100g.

-18-C

아. 근로권

- 거기서 못 만들어서 쓰는 것이 없다.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관리소에서 나간단 말이다. 밭에서 호미질하고 풀 뽑아야 하고 밤새도록 일해야 한다. 안하면 맞아야 하니까….

-15-B

-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오는데 얼마나 귀찮은지 모른다. 휴일도 없다. 김일성 생일이나 김정일 생일에나 쉬지, 휴식이란 자체가 없다. "오늘은 설날이다. 김일성이 생일이다" 하면 한 이틀 쉬는 거 같다.

-15-B

- (토끼 가죽을) 일 년에 열두 개씩은 바친 것 같다. 그리고 학교에 토끼풀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토끼사가 있다. "토끼풀을 해줘라." 과제가 있다. 오후시간에는 전문으로 그런 것을 했던 기억이 난다. 내가 아는 특산물은 밤이 많았다. 오후 시간에는 밤 동산에 가서 밤 털어가지고 바쳐서, 왕밤, 작은 밤, 약밤 내서 생산품 내던 것 생각난다. 밤철에는 밤 털고 다녔던 게 고통이었다.

-15-B

- 인권이란 것이 없다. 숨도 못 쉰다. 매 맞는 것을 자주 본다. 점심때도 죽을 정도로 때렸다. 병원이 다 뭐냐. 뼈가 부러지거나 갈비가 상해서 쓰러졌는데도 일 시킨다.

-15-B

- 14호는 출근 규정도 복잡하다. 출근하면 출근했다는 출근확인 도장이 찍혀야 된다. 이 도장이 다섯 개가 찍혀야 된다. 다섯 개 도장이 찍혀야 우선 휴게실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다. 총화가 다 되면 한 개 도장을 일곱 개, 여덟 개 찍어준다. 찍어주면 여기서부터 집까지 가는 데에 또 네 개 도장이 찍혀야 집에 들어가게 된다. 이 찍히지 않은 도장이 만약에 다음 날 들어오면 "세 번째 도장 왜 못 찍었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다. 여기 이 도장 찍어주는 사람은 여기 전번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맞아야만 도장을 찍어주지, 그 시간이 맞지 않으면 도장을 찍어 안 준다. 아무나 온다고 해서 찍어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몇 시 몇 분 출발하고 도장 딱 찍어주면 여기서 몇 시 몇 분 도착 딱 도장 찍고. 여기서 시간 차이가 생기면 안 된다.

-18-A

- 우리 부모는 거기서 농장일을 했다. 엄청나게 많이 일을 하시더라. 밤 11~12시에 들어오시고 새벽 4~5시에 나가고. 조금만 아파서 못나가거나 지각하면 비판받는 모습도 봤다. 거기 있는 사람들 땡땡이 치고 하면 강제노동 하는데 데리고 가는 뜀뛰기 하는 것도 봤다. 가혹하더라.

-15-B

- 우리는 20시간을 일했다. 갱 안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해도 1시간, 1시간 걸린다. 2시간 남는다. 나와서 목욕하고 뭐 할 새가 없다. 나와서 안 오면 그 집에서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다. 그럼 그걸 먹고 다시 갱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일이 잘 안 될 때는 딱 3일만 되면 길가에서 쓰러진다. 그 자리에서 가다가 조금 주저 않으면, 그저 앉으면 끝이다. 그 자리에서 그건 죽는다.

-18-A

- 우리 큰 딸은 건설에서 일했다. 건설에 배치 받아서 건설에다 일하다가 거기서 3층에서 떨어져서 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농장으로 갔다. 그나마 쉽다는 농장으로. 그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래도 탄광보다는 낫다. 막장 안에 들어가는 것 보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탄광에서 일하다가 광차에 찍혀서 다리 다쳐서 91년도에 다친 다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고름이 나온다.

-18-B

- 수없이 죽었다. 동발이 든다하면 열 몇 개씩 쫙 동발이 틱 무너지니까…. 탄이라는 게 있기도 하고 갈수록 잘 나오는 게 아니다. 득장탄광에 탄 매장량이 넓은데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생겼다. 넓은데 채취 할 때에는 많이 나와도 좁은 구역 가니까는 나오다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안 나오면 계획은 막 떨어지고…. 사람들이 공간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안에 가스가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 탄이 없어져놓으니까 공간이 크다 보니까 탄이 떨어 안지니

까 바닥에 이렇게 있다. 그러나 그게 떨어져서 저절로 굴러 나와 앉아야지 아니면 사람이 들어가서 막 쓸어야 되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간다.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팔팔(폭발)을 한다. 팔을 이렇게 그냥 놓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판하면 위에서 콱 무너지면 꽝 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죽는다. 한번은 아이들이 들어가서 팔팔하고 불 다는 것 까지 봤다. 불 달아야 하니까. 난 돌아서서 금방 나오는데 보니까 사람이 안 나와. 그 안에서 그렇게 나를 불렀대. 그런데 돌이 툭 무너졌어. 굴이 꽉 막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 나오지. 지렛대를 움찔움찔하니까 돌멩이가 들렁들렁 들어지더니 곧바로 실려 나가더라고…. 구멍이 나서…. 구멍 하나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18-B

- (일을) 많이 시킨다. 여기(남한)는 밖에다 비닐을 씌우는데, 북한은 그런 시설이 아니다. 1차, 2차, 3차 김매기를 한다.

-22-A

- 거기는 처음에는 농사를 지었다. 산도 나무를 막 다 꺾고, 농사(지을 땅을) 만들고. 그게 몇 년 후에는 완전히 옥토로 변했다 거기가. 왜 그러냐하면 막 진흙땅이다. 엄청 진흙이고, 비만 조금 오면 발을 흙더미가 싸서 막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옥토다. 너무 농사도 잘 되는데 가꿀 사람이 없으니까 막 밭들이 풀도 있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밭을 이렇게 봐도 풀이 없다. 우리 가족들이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풀을 뜯어오려면 풀이 없어요. 그 풀 뜯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풀들이 없어서. 풀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날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그 과제가 있기 때문에 밭에 절대 풀도 없고 나중에 과일도 엄청 많이 심어가지고 안 나오는 과일이 없다.

-22-B

- 없다. 그 사람들한테 휴식은 없다. 나중에 변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있을 때는 (죄수들한테) 휴식이라는 게 없었다. 그냥 계속 일하는 거, 이렇게 교대로 일하는 걸로 알고 있다.

-22-B

- 아유, 뭐 그 안에서만이 아니고 사회에 나온 애들도 그렇게 일한다. 북한에서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가서 농촌동원 나가고 이러는데 그 안에 애들이야 더 하지. (아이들은) 농장일. 또 크면서 점점 더 다르겠지. 제일 쉬운 게 그래도 농장일이다. 애들이 나가서 할 게. 그렇다고 탄광에 보낼 수도 없고.

-22-B

자. 교육권

- 혁명화구역에는 학교가 있다. 밑의 종신구역에도 학교가 있다. 종신구역에는 소학교 까지만…. 오후에는 아이들도 나가서 일해야 한다. 혁명화구역에는 소학교, 중학교 다 있는데 학생들이 많지 않다. 결혼을 못하니까, 들어올 때 데리고 들어온 아이들만 있다.

-15-A

- 거기서(개천관리소)는 뭐만 가르치나 하면 인민부 4학년까지 다니는데 국어, 수학 이거 2가지만 가르쳐 준다. 다른 건 가르치지 않고. 외국어도 가르치지 않고. 거기는 일체 신문도 못 보고. 거기 졸업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해야 되고.

-18-A

- 14호는 교육이라는 게 전혀 없고 있다면 오직 규정. 계속 규정학습 시킨다. 거기는 뭐 없으니까 천장에 뭘 발라야 되는데 바른 거 보면 몽땅 규정. 그러니까 매일 가서 그 선생한테 가서 이걸 쥐고 가서, 선생은 이걸 쥐고 있다. "몇 항 몇 조가 뭐지?" "어, 어. 맞았어. 통과." "너 오라. 몇 항 몇 조가 뭐지?" "뭐? 거기 암기할 때까지 들어오지 마라."

-18-A

- 서학에 관리성원들 자녀들 공부하는 데 하나 있었고, 봉창에 관리성원구역에 봉창소학교, 봉창중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있고. 득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안에 학교는 총 13개가 있고.

-18-A

- 14호는 소학교 4학년까지 밖에 없다. 중등교육이 없다.

-18-C

- 인민학교 한 개. 중학교 한 개. 그렇게 밖에 없다. 중학교 졸업하고 다 사회로 내보낸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못 한다. 그렇다가 탄광에 배치 받으면 탄광에서 일하고 농장에 배치 받으면 농장에서 일하고….

-18-B

- 해제민과 이주민 구역에도 소학교, 중학교까지 있었다.

-18-C

- 각 리마다 학교가 있다. 한 개 학교에 인민학교, 중학교 다 있다. 교육은 시키는 거다.

-22-A

- 초등학교까지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애들이 일단 오전에 (학교) 가서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산으로 다 내몬다. 근데 그것도 그냥 안 내보내고 거기 양, 염소, 이런 짐승들, 그걸 방목으로 몰아서 내보내는 거다. 나가서 그 가축들을 관리하면서 들어올 때는 그걸(산열매를) 따가지고 들어오고.

-22-B

- 학교는 초등학교까지는 학교가 있다. 그리고 교사는 그 사람들을 교사로 안 쓴다.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서 교사를 한다.

-22-B

차. 주거

- 혁명화구역에서는 가족 다 같이 생활하게 한다. 하지만 종신구역에서는 부부도, 애들도 다 갈라놓는다.

-15-A

- 들어올 때 자체 집이 있다. 부엌, 방 2개짜리. 식구가 많으면 방 2개, 적으면 1개짜리도 있다. 화장실은 밖에 공용이고. 독신세대는 농업중대하고 공업반 가서 생활한다. 그 다음에 단독으로 3~4명이 생활하는, 정치부 부부장이 직접 관할하는 '오리사' 가금류를 키우는 게 있다.

-15-A

- 우리 처음 갔을 때는 세상 처음에서 본 집이다. 초가집에서 살았다. 부엌에 이만한 돌도 파내지도 않고 집을 지었더라. 나무기둥에다가 진흙 바른 농촌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15-B

- 14호에는 방이 이렇게 있다면 절반을 갈라가지고…. 방안에다가 염소를, 그 사람들은 왠지 염소를 많이 길렀다. 염소, 개, 토끼. 이거를 장안에다가 넣고 기른다. 거기서 염소가 똥을 싸고 토끼, 개가 대소변 받아냈을 때 그 냄새…. 그걸 일상화 했는데. 매집마다 그렇게 사는데. 바닥은 맨 흙바닥이다.

-18-A

- 이 집은 다 들리고 막…. 툭 치면 무너지는 정도다. 이만한 슬레이트장도 큰 걸 올려야지 비가 안 오지. 비가 오면 그릇이 없어서 사발, 사발 다 내다놓고…. 겨울에는 추우면 추운대로…. 연탄 땐다.

-18-B

- 이따금씩 목욕탕이 고장이 난다. 겨울에는 물이 없다. 그 앞에 개울물이 많다. 얼음물. 대동강물 아니고.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지. 뭐…. 지하수지. 그것을 막 퍼다가 얼음 둥둥 떠내려 오는 거…. 그걸로 씻지. 새까마니까 씻어야지. 온 몸이 다 시뻘게지지. 목욕은 해야 되니까. 새까마니까…. 그걸로 어떤 사람은 대충 씻고…. 나는 그거 얼음물 둥둥 떠다가 얼마나 많이 씻었는지 모른다.

-18-B

- 그 사람들은 습지 그런데서 정말 창문도 요만한 거 하나밖에 없다. 집에 방이라는 거 없이, 들어가면 그냥 방이자 부엌이자 잠자리이자 그렇게. 정말 습지 같은 데다가 집을 짓는데…. 집들 이렇게 지은 집을 보면 토방, 이런 마루 있지 않나, 근데 여긴 그게 없다. 그냥 바닥보다 더 내려가서 문도 있고, 이렇게 집을 지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최고의 고통을 주려고 이 사람들이 그걸(관리소) 만들었지, 그 사람들을 그렇게 고생 안 시킬 바에는 그렇게 안 데려 온다. 그리고 고된 노동을 시키고.

-22-B

- 화장실은 밖에 있다. 공동화장실. 우물이 있다. 전기는 없다. 촛불이라는 게 없다. 초가 없고 등잔. 어떤 거 있냐하면 솔갱이가 있다. 그 솔갱이를 많이 쓴다고 내가 들었다. 소나무에 이렇게 (송)진 딱 붙은 그런 게 있다.

-22-B

- 수감자들은 배급을 준다. 옷 같은 것도 조금씩 주고. 근데 그렇게 막 안 준다. 정말 그 사람들이 옷 입은 거 보면 다 기워 입었다. 너무 불쌍하게 기워 입은 그런 게 많다. 여름에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겨울에는 너무 춥다. (불을) 때기는 때는데 부엌이 항상 침침, 습기가 차 있다. 그러면 이 불을 때는 게 불이 잘 피지 않는다.

-22-B

- 습지대를 아나? 비 오면 물이 막 흐르고, 그 옆에는 개울천 있고 그런 데 그 사람들 집이 있다. 습지대가 그 사람들 집이다. 그 사람들한테 최고로 고통을 줘야 되니까. 여기 집을 지으려면 여기 이렇게 있다. 집이 한 집에 문이 하나씩. 창문도 하나씩. 창문은 여기 뒤에 있다. 여기 옆에는 없다.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여기 문짝이 시골에 집을 가보면 마루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마루 걸쳐서 들어가는데 이 마루가 없어요. 그냥 이 문이 바닥이다. 땅바닥.

-22-B

카. 구역 및 시설 실태

- 철조망에 전기가 항시 흐른다. 초소가 100m당 한 개씩 있다. 40m 구간은 나무 한 그루도 없다. 200m 한 개씩 탑을 세우고 꼭대기에 경비소가 올라간다. 95년도 이후부터는 고압전기를 투입시키고, 그 앞으로 순찰을 3~4명씩 2시간 간격으로 한다.

-15-A

- 경비대가 200m에 하나씩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키는데, 밤에는 조명을 비춘다. 사람이 나가는 거 보면 무자비하게 쏜다. 종신(구역)에서 탈출한 사람은 없다.

-15-A

- 내가 추측하건데 평안남도 맹산군부터 함경남도 요덕군 사이에 있다. 반경이 40km다. 약 100리가 철조망에 가려진 구역이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것은 함경남도 요덕군 립석리, 룡평리, 대숙리 세 군데로 되어 있다. 광산이 하나 있다. 국가보위부가 관리하는 금광.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은 중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여기가 아마 인구가 제일 많을 거다. 종신에 있는 사람들이다. 혁명화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구 만드는 것 빼면 다 농사다. 주로 옥수수 농사, 감자농사 짓는다.

-15-A

- 여기 정문이 있고 돌아가서 우측으로 관리소 청사가 있다. 보위지도원들 총관리부 청사. 철조망에 전기가 항시 흐른다… 초소가 100m 한 개씩 있다. 40m 구간은 나무 한 그루도 없다. 200m 한 개씩 탑을 세우고 꼭대기에 경비소가 올라간다. 95년도 이후부터는 고압전기를 투입시키고, 그 앞으로 순찰을 3~4명씩 2시간 간격으로 한다. 이 앞은 공터고, 거리가 400~500m 거리가 떨어져 있다. 초대소 합숙 겸 하고, 여기 길이 있다. 길을 따라 올라가면 보위지도원들 사택이 있다. 15줄 정도 된다. 여기로 들어가면… 룡평리에 1반에서 9반까지 있는데, 9반은 총살 대상이다. 여기는 다 종신이니까. 대승리 위에만 혁명화구역. 여기 보위부 사람들 총사가 있고, 여기 올라와서 위쪽에 경비대가 있다. 보위부 초대소. 합숙에는 대략 20~30명 정도 있다. 그 다음에 쭉 나오면, 요덕읍이 있고 여기는 구읍리고, 여기서 쭉 내려오는 길이 80리인데, 역전 옆에 보위부 초대소가 또 있다. 여기는 직계가족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한다. 국가보위부가 내려와서 초대소에서 자고 수용소로 나가고 일 보고 한다. 초대소 옆에 물자가 왔다가 수용소로 들어간다.

-15-A

- (종신구역) 엄청 크다. 규모가 반경 40km 구간 들어가는데, 혁명화구역은 요만하고 나머지는 종신에 들어가는데 엄청 크다. 종신구역도 총화 같은 거 한다. 작

업조가 있다고 하더라. 3인조, 5인조, 7인조 홀수조가 있다고 하더라.

-15-A

- 거기(립석리)를 해방해서 지구를 사회를 만들어 놨다는 거다. 1993년도나 해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 전에 해방됐다고 하더라. 옮기다보니까… 그쪽에 사람들 이사시키는 것을 봤다. 제대군인들 많이 보내고… (경한 지역은) 다 해방된 거다.

-15-B

- 14호는 완전 철조망을 치고 거기다가 고압을 투입해 놓고 거기다가 회전체, 돌아가면 슉 돌면 이렇게 긴 못들이 박혀있으니까 도니까 그 자리에서 죽는다.

-18-A

- 거기도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관리성원 구역 따로 있고, 해제민 구역 따로 있고, 이주민들 구역 따로 있다. 해제민이 우리(18호) 이주민과 비슷하다. 그 구역이 나눠져 있다. 우리 이주민하고 14호 해제민하고 급이 비슷하다.

-18-C

- 립석리 밖에 생각 안 난다. 내가 알기로는 12개 리가 있었는데, 어느 때는 3개 구역은 이름을 알았는데… 요덕군 립석리 이렇게만 생각난다.

-15-B

- 원래 룡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석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리가 아니고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봉창리. 이렇게 해놓고 여기 리에서 갈라지는 데가 많다. 룡산리에는 갈골, 그 구역이다. 갈골군, **, 양동, 원동, 쭉 갈라져 있고. 석산리라고 하면 득장이 있고, 서학이 있고, 명학이 있고, 심산이 있고, 봄골이 있고, 장산이 있고 이렇게 쭉 나가고. 또 봉창도 그렇게 나가고. 봉창에는 산리가 있고, 호원, 봉창, 수안.

-18-A

- 서학에는 관리성원만 살고. 그리고 이쪽 구역에 봉창 관리성원 구역이라고 따로 있다. 여기는 따로 지명이 나와 있지 않고 봉창 관리 성원지역이라고 한다. '관리성원 지구, 관리성원 지구'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한 개 관리 성원만 따로, 별도로 집을 잘 지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학하고 두 곳이 있었다.

-18-A

- 그 안에 보위부도 다 있다. 그리고 그 관리 안전원들 상태도 대동강 딱 그 동 1리라 그 안에 갱이 많다. 갈벌갱, 보피갱, 명학갱, 득장갱, 물호천 청년갱, 수산

갱, 명학갱, 장산갱. 저기 장산갱까지 끝이다. 그 다음에 봉창이거든. 봉창은 우리가 못 가게 되어 있다.

-18-B

- 득장군이라고 안하고 득장지구라고 한다. 지금 개편되어서 득장지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크다.

-18-B

- 북창. 우리가 살았던 갈골부터 ****, 득장, 명학, 장산까지는 그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 갈골부터 보피. 순서가 갈골, 보피, 득장, 심산, 명학. 그 다음에 장삼.

-18-B

- 한 개 지구가 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다. 4개 구역을 없애고, 봉창지구를 남겼다. 원래 있던 곳이 득장지구. 갈골지구, 룡산지구, 득장지구, 봉창지구, 룡등지구…. 봉창지구를 남기고 나머지를 없앴다.

-18-C

- '득장탄광연합기업소'로 바뀌었다. 원래는 평안남도 북창군 득장구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북창군에 속하지 않고, '득장구'가 한 개의 군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에 도에 직속으로 속하는 '구'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2007년도에 바뀌었다. 행정지역은 평안남도 득장구로 되어 있다. 그 안에 탄광에 '득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로 된 거다.

-18-C

- (함정이) 있다. 22호라는 것은 많은 리를 가지고 있다. 횡령리, 굴산리, 중봉리, 락산리, 두 개가 더 있다. 함정이라는 것은, 리가 있지 않나. 이게 사거리라면, 이 본부에서 묘하게 이렇게 갈라져 나간다. 이것을 철조망 쳐야한다. 이 둘레로도 함정을 파야한다. 땅에 빠지게 안보이게 덮어 놓는다. 매 리마다 초소가 다 있다. 초소를 거쳐야 선생들도 나갈 수 있다. 엄격한 거다.

-22-A

- 굴산리, 중봉리, 용계리, 락생 쪽으로 나가게 되면 창평쪽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었다. 그런데 창평이 해산되면서 락산 쪽으로 모든 시설을 옮겼다. 창평이 해산된 게, 엄청 오래됐다. 여기가 행영리, 굴산, 중곡, 용계, 락생 이렇게 나가는 거다. 행영리에서 락생, 용계, 중곡, 굴산….

-22-A

- 22호 하면 제일 기억에 떠오르는 게 '함정.' 함정이 있다. 여기가 22호라고 하면

여기를 둘러싸고 함정이, 함정이 이렇게 딱 파져있다. 못 나온다. 거기서 절대. 22호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다 앞 지대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지리를 모르지 않나. 지리를 알면 바로 나오면 두만강인데 넘을 수 있다. 근데 도망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울타리가 아니라 깊이 3m 정도의 함정을 깊이 찬다. (주요 지점만이 아니라) 다 팠다. 함정을 파면 공간이 이렇게 난다. 그러면 거기다 나무를 얼기설기 놓는다. 이게 함정이라는 걸 안 알리게 나무를 이렇게 놓고 풀 같은 거 얼기설기 다 올려놓는다. 그러면 그게 조금 오랜 세월이 되면 나무 이파리가 또 떨어지고 이런 풀들이 막 난다. 그게 함정인 걸 모른다. 그리고 봉우리마다 경비초소가 딱 서있기 때문에 그 함정을 딱 보면 경비초소가 딱 서있고. 봉우리마다. 그러니까 다 연계가 되어 있다. 경비초소가 딱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절대 도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22-B

- 장 공장. 된장 만드는 장 공장. 그리고 피복 공장, 목장. 돼지, 닭 치는 공장. 그리고 정미소가 엄청 크게 있다. 가공공장이. 그게 엄청 크게 되어 있다. 내가 있을 때는 거기까지 알고, 나중에 피복 공장이 생겼고…

-22-B

- 사을리, 락생, 행영 이렇게 들어가면서 있다. 회령에서 들어가면서 사을리, 락생, 행영 이렇다. 행영에서 굴산, 중봉 그게 연결이 돼있는데… 행영 그 길에 본부가 차지하고 있었다.

-22-B

- (인원이) 줄기 때문에 22호 관할구역을 이쪽 사회에다가 내고 줄이는 거 같다. 창평을 (사회에) 내어놓은 때가 90년도 그 때 아마 내어놓았을 거다.

-22-B

- 행영리, 락생리, 사을리. 굴산리, 중봉리. 그거 다 22호다. 중봉은 탄광이 엄청 큰… 굴산은 그냥… 이게 다 농경지다. 벼농사가 없다. 콩, 옥수수, 배, 과일 많이 심었다. 그리고 또 배추랑. 여기(행영)는 본부. 장 공장, 공장들이 일단 많이 있고. 다른 데는 있긴 있어도 여기에 기본이 다 들어가 있다. 이 중봉탄관은 어디랑 연결이 되는가 하면 세천이라는 곳이 있다. 세천으로 해서 철길로 이렇게 탄이 왔다 갔다 한다. 사을리, 락생리는 농경지다.

-22-B

타. 기타

- 그러니까 초기에 개천 수용소를 만들 때는, 종파에 관련된 사람들, 가족들, 그 후손들… 그 이후에 조건이 좀… 종파들이 1960~1970년대에 다 숙청됐으니까, 종파들이 많지 않았다. 또 좀 달라져서 다른 대상들이 가게 됐다. 지주, 자본가 친족 후손들… 북한을 비방하는 악질 월남도주자 후손들도 잡아넣고. 거기까지가 개천이고… 북창에 있는 북창수용소는, 정치권·경제권 같이 말려들어온 사람들. 그거는 사회안전부 소속. 회령도 보위부 소속인데, 거기는 진짜 엄중한 사람들이다. 거기는 반정부운동에 가담했다든가, 반정부음모 연루자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살아나오는 사람들이 없다. 개천보다 회령이 더 엄중한 거다. 단 한 명도 살아나오는 사람이 없다. 그거(청진)는 6·25 끝나고 포로수용소였다. 유엔군 포로수용소였는데…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보낼 사람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후에 정치범수용소로 바뀌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대상들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은 아니다.

-15-A

- 그리고 반정부 운동을 한 본인들은 회령에 가고, 사촌 이상들은 요덕에 들어가고 그런다. 직접가담자, 직계가족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 안의 총살대상들은, 반정부가담자의 직계존속들. 직계가족들.

-15-A

- 가족세대가 따로 있고, 독신세대가 따로 있는데… 독신세대 농산중대가 있고, 공업반이라는 게 있다. 거기는 가구도 만들고 자체발전소도 돌리고 이런… 가구는 말하자면 한국에서 파는 만큼 질이 좋았으니까… 가구가 아주 특색 있는 가구로 나오니까, 양이 많이 안 나오니까 국가보위부나 그런 간부계통이나 사간다. 그 다음에 가족세대 농산반 있다.

-15-A

- (혁명화구역)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200~300명. 해제돼서 나가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숫자는 계속 유지가 된다.

-15-A

- 우리 같은 사람은 해명되면 나올 수 있는 부류다. 중한 사람들은 잘 해야만 나올 수 있고, 종신은 아예 거기서 살아야만 하는 부류가 3부류가 있더라.

-15-B

- 72년부터 80년 전후 그 기간에 가족혁명화로 들어간 사람이 많았다. 그 이후로는, 정치범. 종파의 가족이라든가, 전쟁에 월남한 가족들이라든가, 김일성하고

같이 일하다가 김정일이 반대했던 세력들이 종신으로 들어가 있더라.

-15-B

- 그러니까 받아주는 직장도… 그저 "너 여기서 일하라" 하면 좋든 나쁘든 거기 가야 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나간다고 하면 거기서는 "18호 관리소에서 왔어? 저 놈 절로 보내." 제일 힘든 데로 가서 "집은 없어. 집을 짓고 살겠으면 살고 말라면 말라." 백의 하나, 천의 한 명 정도는 나가는 거 있다.

-18-A

- 거기 들어가면 원래는 우리 '말하는 동물,' 말하는 동물이다. 아무 권한도 없다. 그렇게 해서 난 해제된 사람이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나는 해제 못 되고, 여기는 해제되어서 이 사람이 잘못했지. 사실은 나는 잘했는데… 그래서 싸움하면 되도록 내가 져야한다. 날 칼로 찔러도 난 말 못 한다.

-18-B

- 좀 애매한 사람들인데… 정치범도 아니고 경제범도 아닌, 말하자면 옛날의 지주, 자본가, 전쟁 시기 만행자(치안대 가담자) 토대가 나쁘고… 말하자면 옛날의 자체계급이 나쁘다는 소린데…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관리소에 보냈다. 그래서 18호 관리소 확장되고, 17호, 23호 숱한 관리소가 생겨났다. 그러다가 다 폐기되고 95년도에 18호 관리소만 남았다.

-18-C

- 22호 관리소가 1975년도에 창립되었을 거다. 1976년에 청진에 살다가 거기에 들어갔다. 고향은 청진인데, 아버지가 대남공작을 했다. 거기가 노출되어 해산된 다음에 여기에 배치된 거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엄청 골 안에 있었다.

-22-A

- 이혼을 시키고 자식하고 남편만 들여보내고. 그런데 어떤 여자들은 모성애가 강하지 않나. 그러면 나도 따라 들어가겠다고. 그럼 들어가는 거다. 못 나간다.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22-B

- 미공급 시기는 아마 뭐 중국으로 도강했는데 가서 내가 종교를 접했다든가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중국에 가서 뭐했다는, 어느 기독교 같은 이런 데를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도움 받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들어오고. 그런 가족이 들어간다. 그 때 1990년대 그 때까지만 해도 막 1986년도, 1990년도만 해도 가족을, 우리 가정에서 누군가 남쪽으로 나갔다, 그러면 그 가정을 몽땅 이주를 시켰다. 그 관리소로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서도 또 부류에 따라서 아, 이 사

람이 가정적 환경이 깨끗한데 혼자서 가서 그랬다 이러면 그 집은 국경하고 먼 곳으로 추방을 시키고 본인만 교화생활을 시킨다든가 수용생활을 한다든가. 또 독신들이 가는 수용소가 있다. 청진 수성에 23호인지, 25호인지 그거 있다. 거기로 독신들이 들어간다. 가족은 22호 같은 데로 보내고. 조금 경한 사람들이 혜숙씨랑 같은 데 들어갔던 사람들은 경한 데 들어갔던 사람들인 거다.

-22-B

- (수감될 관리소를) 국가가 결정을 하는데, 이제 내가 얘기 했지 않나. 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는데, 가서 조사를 받아야지. 조사를 받아서 정말 엄중하게 정말 중국에 가서 종교를 접했다 이러면 북한에서 제일 크게 엄중한 걸로 취급한다. 그런데 나를 하나 봤으면 관리소를 보내야 되겠는데 그 집이 나를 하나 다침으로 인해서 우리 집에 비행사가 있다, 이러면 절대 못 다친다. 비행사가 있으면, 제일 안 다치는 게 비행사. 그리고 외국에 외교관으로 나가있고, 우리 집안에 보안성, 어디 고위급 간부가 있다, 이러면 나만 처벌을 하는 거다. 나만. 그러면 혼자 가는 그런 데(관리소)도 보낼 수 있고 아니면 감옥, 교화소, 이런 데로 보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토대가 엄청 나쁘다, 우리 집에 누군가 월남하고, 아무튼 당원도 없고, 뭐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 집은 나 하나로 해서 통째로 관리소로 넘겨진다. 이거에 따라서 죄가 교화소를 가나, 수용소로 가나, 독신, 16호로 가나 이야기가 틀려지는 거다. 16호 같은 거는 교양돼서 나오는 거지 않나. 그 안에 들어갔다가.

-22-B

www.kinu.or.kr

북한 정치범수용소

책임연구원: 이금순

공동연구원: 김수암
이규창

보조연구원: 홍예선
김경란

KINU 통일연구원

9 788984 797024 93340

ISBN 978-89-8479-702-4